

- 2021년도 제1회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 청 남 도
(건 설 교 통 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건설정책과	3
○ 건축도시과	35
○ 교통정책과	71
○ 도로철도항공과	127
○ 토지관리과	165
○ 종합건설사업소	175
○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191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205

< 특 별 회 계 >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15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221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33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1.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6
2. 혁신도시 지정 기념 내포주민 화합한마당	8
3. 충청남도 설계기준 개정 용역	10
4.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12
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4
6.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16
7.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차지원	18
8. 스마트 타운 챌린지(성립전)	20
9.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성립전)	22
1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홍보	24
11.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6
12. 내포보부상촌 운영보조	28
13.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재무활동)	30
14.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재무활동)	32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 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01-01, 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및 이전 추진 기관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사무관리비) 기정 42,500천원 → 경정 0천원
(행사운영비) 기정 27,000천원 → 경정 0천원
- ※ 증감사유: 업무 이관(건설정책과→혁신도시정책과)
- 사 업 량 :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관련 홍보 행사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행사 운영 등
- 지원 근거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5-3-1)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0천원 ◦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사무관리비) = [기정 42,500천원 → 경정 0천원] ◦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행사운영비) = [기정 27,000천원 → 경정 0천원] ※ 업무 이관에 따라 혁신도시정책과에서 동일 사업 편성	
2021년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0		69,500	0	△69,500		
국 비							
도 비	0		69,500	0	△69,5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8,000	108,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	홍순광 (행) 2810	윤종한 (행) 4064	김택근 (행) 4629

혁신도시 지정 기념 내포주민 화합한마당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 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기념하여 내포지역 주민들과 화합하여 축하의 장을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 30,000천원 → 경정 0천원]
- ※ 증감사유: 업무 이관(건설정책과→혁신도시정책과)
- 사업 량 : 주민 화합한마당 1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내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혁신도시 지정 기념 화합한마당 개최
- 지원 근거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5-3-1)과 연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혁신도시 지정 기념 내포주민 화합한마당 0천원 = [기정 30,000천원 → 경정 0천원] ※ 업무 이관에 따라 혁신도시정책과에서 동일 사업 편성	
2021년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0		30,000	0	△30,000		
국 비							
도 비	0		30,000	0	△30,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본예산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	홍순광 (행) 2810	윤종한 (행) 4604	김택근 (행) 4629

충청남도 설계기준 개정 용역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표준화 및 적정공사비 산출을 통하여 시공의 합리성 도모 및 건설공사 품질 확보,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설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원가 검토 및 적정공사비 산출 등 관련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 개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0. 1. ~ 2022. 2. 28.(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 20,000)
※ 편성사유: ‘충청남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현행화를 위한 추정 신규 편성
- 사 업 량 :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충남도 설계기준 개정(안) 수립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업체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청남도 지방도 설계요령, 충청남도 설계기준,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에 각종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 시설기준, 품셈 등 개정사항 반영
- 지원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1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건설기준)

①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준정부기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설계기준 개정 용역 : 20,000천원 ◦ 충청남도 설계기준 개정 용역 산출기준 · 인건비 : 10,599천원 / 경비 : 9,401천원(여비, 인쇄비, 회의비, 부가세 등)	
2021년 총사업비	20,000천원(도 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0,000		0	20,000	20,000		신규
국 비							
도 비	20,000		0	20,000	20,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설기술팀	홍순광 (행) 2810	이상호 (행) 4605	강기석 (행) 4624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 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성능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법정 의무사항)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월 ~ 2022. 5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800,000천원(도 800,000)
 - ※ 편성사유: 법률 제정(“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 사 업 량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 기반시설 7종 : 도로, 하천, 저수지, 상수도, 하수도, 항만·어항, 공동구
- 사업시행방법 : 민간업체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①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1차 '21~'25년)
 - ②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
- 지원 근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 제1항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 800,000천원 · 인건비 : 274,139천원 · 재경비 : 301,553천원 (인건비의 110%) · 기술료 : 115,138천원 (인건비+재경비의 20%) · 경비 : 30,446천원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6,083천원 · 부가세 : 72,736천원	
2021년 총사업비	800,000천원(도 8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800,000		0	800,000	800,000		신규
국 비							
도 비	800,000		0	800,000	800,000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설기술팀	홍순광 (행) 2810	이상호 (행) 4605	이기선 (행) 462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에 의한 주민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낙후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도모
- 사업 위치 :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개발제한구역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04,500천원**(균 1,804,500) [기정 2,490,000천원 → 경정 1,804,500천원]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2,005,000천원(균 1,804,500, 시군 200,500)
 ※ 증감사유: 중앙부처 당초 배정('20. 9.) 금액과 확정 교부액('21. 2.) 차이에 따른 경정
- 사 업 량 : 3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 정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2.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2,005,000천원(균 1,804,500, 시군 200,500) ○ 공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건(균 688,500 시 76,500) ○ 계룡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건(균 720,000 시 80,000) ○ 금산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건(균 396,000 군 44,000) * (본예산) 도 유보액 685,500천원 → (추경 1회) 도 유보액 0원	
2021년 총사업비	2,005,000천원(균 1,804,500, 시군 200,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005,000		2,690,500	2,005,000	△685,500		
국 비	1,804,500		2,490,000	1,804,500	△685,500		
도 비							
시군비	200,500		200,500	200,500	-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90%, 시군비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485,000	3,485,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홍순광 (행) 2810	김용목 (행) 4603	황대일 (행) 2813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 등 도시계획시설 개량, 정비 및 확충 지원
- 사업 위치 : 도내 도시계획시설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697,675천원**(도 8,697,675) [기정 8,252,675천원 → 경정 8,697,675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도 총사업비 : 17,395,350천원(도 8,697,675, 시군8,697,675)
- ※ 증감사유: 시군 도시계획시설 확충·개량 등 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
- 사 업 량 : 도시계획시설사업 72건(추경 1회 11건, 본예산 61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도시계획시설 정비, 개량 및 확충 사업 시행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년 1회 추경 증액 890,000천원(도 445,000, 시군 445,000)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11건 ◦ 차암동 녹지공원 개선사업 200,000천원 ◦ 불당3교 공원 보수공사 50,000천원 ◦ 하늘맞이공원 내 배수로 설치 50,000천원 ◦ 불당대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40,000천원 ◦ 백석3로 인도정비 공사 40,000천원 ◦ 쌍용1동 도로정비공사 120,000천원 ◦ 쌍용1동 가로·보안등 신설사업 50,000천원 ◦ 쌍용동 인도정비공사 120,000천원 ◦ 유통단지공원 산책로 등 정비공사 80,000천원 ◦ 반야산 완충녹지 정비사업 70,000천원 ◦ 합덕읍 공원 내 화장실 신축 70,000천원 ■ 2021년 본예산 편성 61건 16,505,350천원(도 8,252,675천원, 시군 8,252,675천원)	
2021년 총사업비	17,395,350천원(도 8,697,675, 시군 8,697,67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7,395,350		16,505,350	17,395,350	890,000		
국 비							
도 비	8,697,675		8,252,675	8,697,675	445,000		
시군비	8,697,675		8,252,675	8,697,675	445,000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비 추가 투입 가능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582,500	5,582,5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완료
2020년 (2021~2025)	-	-	-	-	-	-	2021. 5월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홍순광 (행) 2810	김용목 (행) 4603	황대일 (행) 2813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국고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의 부지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여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및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사업 위치 : 아산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5. 12. 31.(다년도 사업)
- 예 산 액 : 271,250천원(균 271,250) [기정 316,750천원 → 경정 271,25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387,500천원(균 271,250, 시 116,250)
 - ※ 증감사유: 중앙부처 가내시('20. 9.) 금액과 확정 교부액('21. 4.) 차이에 따른 경정
- 사업 량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장
- 사업 내용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 지원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②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 271,250천원 ° 지방채 이자 387,500천원(국비 70%, 시군비 30%) ※ 2019년 지방채 이자지원 8,000,000천원 * 2%(금리) * 70%(지원율) = 112,000천원 2020년 지방채 이자지원 13,000,000천원 * 1.75%(금리) * 70%(지원율) = 159,250천원	
2021년 총사업비	387,500천원(균 271,250 시군 116,2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87,500		452,500	387,500	△65,000		
국 비	271,250		316,750	271,250	△45,500		균특
도 비							
시군비	116,250		135,750	116,250	△19,500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5,271	125,271	0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홍순광 (행) 2810	김용목 (행) 4603	황대일 (행) 2813

스마트 타운 챌린지(성립전)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스마트 행복도시 구축
	세부사업	스마트 타운 챌린지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주민참여형 스마트 문제해결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의 교통·안전·환경 등 복합적 문제의 해결
- 사업 위치 : 서산시 대산읍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1. 12. 31.(다년도 사업) ** 2020년 예비사업 시행 후 2021년 본사업 공모 선정
- 예 산 액 : **2,000,000천원**(국 2,000,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4,000,000천원
- 사 업 량 : 스마트 솔루션 구축(안전·환경·교통문제 대응)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장
- 사업 내용 :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산단 안전 드론 서비스 등 스마트 안전모델 구축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 4,000,000천원 ○ ‘함께 만들어가는, 서산형 스마트 안전 모델 구축’ 스마트 솔루션 구축 사업비 = 국 2,000,000천원 + 서산시 2,00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4,000,000천원(국 2,000,000, 서산시 2,0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4,000,000		0	4,000,000	4,000,000		신규
국 비	2,000,000		0	2,000,000	2,000,000		국고
도 비							
시군비	2,000,000		0	2,000,000	2,000,000		
기 타							

* 부담비율: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도시팀	홍순광 (행) 2810	윤종한 (행) 4604	김택근 (행) 4629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성립전)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스마트 행복도시 구축
	세부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솔루션 기술을 접목한 시설 구축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제공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홍성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875,000천원**(국 1,875,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3,750,000천원
- 사업 량 :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폴,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장, 홍성군수
- 사업 내용 : 보행자 및 차량 감지, 교통상태 분석, 공공 와이파이, 버스 운행정보 제공 등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적용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 3,750,000천원(논산시, 홍성군) 총사업비 : 3,750,000천원(국비 1,875,000천원, 시군비 1,875,000천원) ※ 개소당 사업비: 국비 937,500천원 + 시군비 937,500천원 = 1,875,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3,750,000천원(국 1,875,000, 시군 1,87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750,000		0	3,750,000	3,750,000		신규
국 비	1,875,000		0	1,875,000	1,875,000		국비
도 비							
시군비	1,875,000		0	1,875,000	1,875,000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도시팀	홍순광 (행) 2810	윤종한 (행) 4604	김택근 (행) 4629

“더 행복한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센터 홍보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스마트 행복도시 구축
	세부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광역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의 이용·활용 방법 등을 홍보하여 도민 체감도 및 서비스 이용률 향상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청남도”로써 인지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6,500천원(도16,500)
 - ※ 편성사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서비스 활용 홍보
- 사 업 량 : “더 행복한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센터 홍보
- 사업시행방법 : 언론사 홍보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인터넷·모바일 등을 활용한 각종 언론사 배너 및 옥외 홍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더 행복한 충남 광역 스마트도시 안전망 홍보 : 16,500천원 ○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홍보 : 10,000천원 · 지방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홍보 : 5,000천원 × 2개월 × 1개 사 = 10,000천원 ○ 옥외홍보 : 5,000천원 · 사설 옥외 전광판 홍보 : 5,000천원 × 1개월 × 1개소 = 5,000천원 ○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광고료의 10%) : 1,500천원 · 수수료 : 15,000천원 × 10% = 1,5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16,500천원(도 16,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6,500		0	16,500	16,500		신규
국 비							
도 비	16,500		0	16,500	16,5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도시팀	홍순광 (행) 2810	윤종한 (행) 4604	김택근 (행) 4629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지역개발 지원
	세부사업	지역개발 지원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0천원 [기정 167,000천원 → 경정 0천원]
- ※ 삭감사유: 환경부 질의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환경부, 2021. 5. 20.)
- 사 업 량 : 15개 시·군 94개 기반시설사업(신규사업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발전촉진형(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거점육성형(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태안군)
- 사 업 내 용 :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삭 감 근 거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1097(2021.5.20.)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질의회신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1097(2021.5.20.)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질의회신 >

1.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다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바, 향후 개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지역개발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 167,000천원(도비 167,000) · 충청남도 15개 시·군(발전촉진형 6개 시·군, 거점육성형 9개시·군) - 94개사업(신규포함) 1)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선정 1식 2) 환경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1식 [기정 167,000천원 → 경정 0천원]	
2021년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0		167,000	0	△167,000		
국 비							
도 비	0		167,000	0	△167,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본예산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역발전팀	홍순광 (행) 2810	권호욱 (행) 4606	이은철 (행) 4627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지역개발 지원
	세부사업	지역문화유산개발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보부상의 근거지였던 예산 덕산지역에 보부상촌을 조성하여 시대별 상업의 특성 및 역할을 알리는 박물관 및 민속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거점 육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3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0,000천원(도 300,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1,200,000천원
- 사 업 량 :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비 보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예산군
- 사업 내용 : 내포보부상촌 개장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비 지원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2013.9.12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예산군 시행협약(운영관리 공동부담)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시행 협의 (2013.9.12.)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예산군 시행 결정에 따른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률 및 운영관리자, 운영관리비 협의

- 지방비 부담률 : 도비 80%, 군비 20%
- 운영 관리자 : 예산군수
- 운영 관리비 : 공동부담 (도 50%, 군 50%)

예산군 & ㈜내포보부상촌 위수탁계약 체결 (2019.11.20.)

제26조 (관리운영비의 정산) ③손익금의 배분은 위탁사 50%, 수탁사 50%로 하여 30일 이내에 정산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운영비(1년차) : 1,200,000천원 (도 300,000 군 300,000 자부담 600,000) ○ (1,408,067천원÷12)×10개월분 ('20.3 수탁사 운영시작) ≒ 1,20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1,200,000천원(도 300,000 군 300,000 자부담 600,000) ※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기간(2021 ~ 203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700,340		0	1,200,000	1,200,000	1,500,340	신규
국 비							
도 비	675,085		0	300,000	300,000	375,085	
시군비	675,085		0	300,000	300,000	375,085	
자부담	1,350,170		0	600,000	600,000	750,170	수탁사

* 부담비율 : 도비 25% 시군 25% 자부담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완료
2020년 (2021~2025)	-	-	-	-	-	-	2020. 10월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역발전팀	홍순광 (행) 2810	권호욱 (행) 4606	강성민 (행) 4628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재무활동)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통 계 목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705-04)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시·군의 도시계획시설 개량, 정비 및 확충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사업비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상환 기간 : 2022. 1. 1. ~ 2036. 12. 31.(5년 거치, 10년 상환)
- 예 산 액 : 0천원 [기정 218,750천원 → 경정 0천원]
※ 증감사유: 예산담당관실의 융자계획(당초 '20년 12월 융자 → '21년 1월 융자) 변경에 따른 상환기간 변경
- 사 업 량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20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6459(2021. 4. 28.)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융자조건)

-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0천원 [본예산 218,750천원 → 경정 0천원] (참고) 융자원금(12,500,000천원) * 이율(1.75%) = 218,750천원	
2021년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4,796,875		218,750	0	△218,750	14,796,875	
국 비							
도 비	14,796,875		218,750	0	△218,750	14,796,875	
시군비							
기 타							

*향후투자: 원금 12,500,000천원, 이자 2,296,875천원(5년 거치, 10년 상환)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본예산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홍순광 (행) 2810	김용목 (행) 4603	황대일 (행) 2813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재무활동)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통 계 목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705-04)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상환 기간 : 2022. 1. 1. ~ 2036. 12. 31.(5년 거치, 10년 상환)
- 예 산 액 : 0천원 [기정 82,250천원 → 경정 0천원]
※ 증감사유: 예산담당관실의 융자계획(당초 '20년 12월 융자 → '21년 1월 융자) 변경에 따른 상환기간 변경
- 사 업 량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20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6459(2021. 4. 28.)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융자조건)

-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0천원 [본예산 82,250천원 → 경정 0천원] (참고) 융자원금(4,700,000천원) * 이율(1.75%) = 82,250천원	
2021년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5,563,625		82,250	0	△82,250	5,563,625	
국 비							
도 비	5,563,625		82,250	0	△82,250	5,563,625	
시군비							
기 타							

*향후투자: 원금 4,700,000천원, 이자 863,625천원(5년 거치, 10년 상환)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본예산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역발전팀	홍순광 (행) 2810	권호욱 (행) 4606	이은철 (행) 4627



건축도시과

건축도시과

1. 품질점검단 운영	38
2.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40
3.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추진	42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4
5. 건축물 분양사업 보고 및 감독업무 추진	46
6.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8
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가사업	50
8.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52
9.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54
10. 광고물 현황조사, 방지판 부착, 안전점검 관리 지원 사업	56
1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58
12.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60
13.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2
14. 새뜰마을 환경 개선 사업(서천)	64
15.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66
16. 소규모 재생사업 발생이자 반납	68

품질점검단 운영	정책사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세부사업	주택 및 지역 개발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입주자의 공동주택 품질 관련 민원 예방 및 도내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건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천안시 제외 → 조례 위임으로 천안시는 품질점검단 직접 운영)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 30,000)
 - ※ 증감사유 : 주택법 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 사 업 량 : 품질점검단 운영 1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공동주택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시공상태 자문,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자문(하자여부 판단 자문),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권고 등
- 지원 근거 : 주택법 제48조의3 제1항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 ① 시·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품질점검단 운영 ○ 품질점검위원회 참석 수당 : 24,750천원 - 150천원 × 15명 × 11회 ○ 기타운영비 등 : 5,250천원 - 477.2천원 × 11회	
2021년 총사업비	30,000천원(도 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0,000		0	30,000	30,000		신규
국 비							
도 비	30,000		0	30,000	30,000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추경1회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윤영산 (행) 2820	노윤철 (행) 4641	양대남 (행) 4653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정책사업	주택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세부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통 계 목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출자금(5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건설형 6개지구 : 천안, 아산, 당진, 서천, 홍성, 예산)
- 사업 기간 : 2019. 1. 1. ~ 2022.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8,646,824천원**(기 16,856,824, 도 41,790,000) [기정 26,337,295 → 경정 58,646,824]
- ※ 증감 및 재원변경사유 : (도비) 출자계획금액 반영, (기금)행복주택 재정지원단가 상향에 따른 기금 지원금액 반영 및 기존 국비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원 변경
- 사 업 량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선도사업 1,000호 공급(건설형 900호, 매입형 100호)
- 사업시행방법 : 공사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개발공사
- 사업 내용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36㎡, 44㎡, 59㎡)
- 지원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3조의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 (기금)행복주택 건설지구 연차별 지원비율에 따른 국비반영 : <u>16,856,824천원</u> · (첫사업 600호) 22,534,220천원 × 50% = 11,267,100천원 · (기타지구 315호) 12,421,609 × 45%(사업승인, 착공) = 5,589,724천원 ※ (연차별 국비 지원비율) 1년차(사업승인) 25%, 2년차 25%, 3년차 25%, 준공시 30% ○ (도비) : <u>41,790,000천원</u> · ('21년 출자계획금액) 31,640,000천원 + ('20년 출자계획금액 부족분)10,150,000천원	
총사업비	243,063,554천원(기금 34,955,809, 주택도시기금 46,607,745, 도 71,750,000, 지역개발기금 35,000,000, 기타 54,7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43,063,554	49,506,840	26,337,295	58,646,824	32,309,529	134,909,890	
국 비	34,955,809	4,506,840	16,337,295	16,856,824	519,529	13,592,145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46,607,745	0	0	0	0	46,607,745	충남개발공사
도 비	71,750,000	10,000,000	10,000,000	41,790,000	31,790,000	19,960,000	
부담금등	35,000,000	35,000,000	0	0	0	0	지역개발기금
기 타	54,750,000	0	0	0	0	54,750,000	충남개발공사

* 부담비율 : 국비 14%, 주택도시기금 19%, 도비 30%, 지역개발기금 14%, 기타 2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9,506,840	49,506,84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0. 완료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팀	윤영산 (행) 2820	조정림 (행) 4645	김태영 (행) 4647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추진	정책사업	건축문화 진흥
	단위사업	건축문화 진흥
	세부사업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기타보상금(301-12)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누구나 참여, 전통건축과 현대건축 공존, 내포신도시 대표축제 발굴
- 사업 위치 :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충남도서관 일원(잔디광장, 문예회관, 도청로비 등)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행사기간(2021.10.15.~2021.10.17.)
- 예 산 액 : **182,000천원** [기정 209,000천원 → 경정 182,000천원]
 ※ 증감사유 :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에 따른 행사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중 시설비 감액
- 사 업 량 : 문화행사 1식(개막식, 공모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매년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를 내포신도시 지역 문화축제로 확대·개최(개막식, 어린이 그리기 대회, 학생공모전, 건축기행, 체험활동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제12조제1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23조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공모전·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3조(전시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추진 ○ 사무관리비 : 17,000천원 · 홍보영상 제작 및 매체홍보 10,000천원 · 신문 및 일간지 광고 7,000천원 ○ 행사운영비 : 135,000천원 · 개막식(무대설치, 전야제, 문화행사 등) 35,000천원 · 어린이·초등생 충남도청·충남도서관 그리기 대회 3,000천원 · 건축, 디자인 대학생 공모전(우수작품 전시 등) 12,000천원 · 중고등학생 건축캠프(대학생활, 전공진로 상담 등) 5,000천원 · 전문가 초대전(교수, 건축사, 디자이너, 교육청 학교설계, 연합설계 등) 10,000천원 · 건축기행(고(古)건축, 공공건축물 건축현장, 템플스테이 등) 10,000천원 · 체험활동 및 전시(전통건축, 종이건축, 3D프린터, VR 주택체험 등) 50,000천원 · 세미나(건축, 디자인 포럼, 도시재생 세미나 등) 10,000천원 ○ 기타보상금 : 30,000천원 · 충남도청·충남도서관 그리기 대회 시상금(어린이·초등생) 2,000천원 · 충남건축문화대전 시상금(건축 관련학과 대학생) 14,000천원 · 충남공공디자인전 시상금(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생) 14,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182,000천원(도 18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82,000		209,000	182,000	△27,000		
국 비							
도 비	182,000		209,000	182,000	△27,000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5,000	73,410	1,590	98%	-	'20년 3회추경 삭감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윤영산 (행) 2820	이정호 (행) 4642	안동수 (행) 466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	건축문화 진흥
	단위사업	건축문화 진흥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공건축물 노후화로 실내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인 한국형 그린뉴딜사업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3,430,000천원**(국 11,900,000 도 1,530,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17,000,000천원
 - ※ 증감사유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1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총 70동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2개 시군
- 사업 내용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보건소(지소), 시군 의료원, 어린이집의 단열·창호 보강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1식
- 지원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총 70동) ○ 공주시(5동) : 1,214,287천원(국 850,000, 도 109,287, 시 255,000) ○ 보령시(1동) : 242,857천원(국 170,000, 도 21,857, 시 51,000) ○ 아산시(9동) : 2,185,714천원(국 1,530,000, 도 196,714, 시 459,000) ○ 서산시(3동) : 728,571천원(국 510,000, 도 65,571, 시 153,000) ○ 계룡시(2동) : 485,714천원(국 340,000, 도 43,714, 시 102,000) ○ 당진시(1동) : 242,857천원(국 170,000, 도 21,857, 시 51,000) ○ 금산군(4동) : 971,429천원(국 680,000, 도 87,429, 군 204,000) ○ 부여군(1동) : 242,857천원(국 170,000, 도 21,857, 군 51,000) ○ 서천군(18동) : 4,371,429천원(국 3,060,000, 도 393,429, 군 918,000) ○ 청양군(21동) : 5,100,000천원(국 3,570,000, 도 459,000, 군 1,071,000) ○ 예산군(3동) : 728,571천원(국 510,000, 도 65,571, 군 153,000) ○ 태안군(2동) : 485,714천원(국 340,000, 도 43,714, 군 102,000)	
2021년 총사업비	17,000,000천원(국 11,900,000, 도 1,530,000, 시군 3,57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7,000,000		0	17,000,000	17,000,000		신규
국 비	11,900,000		0	11,900,000	11,900,000		국고
도 비	1,530,000		0	1,530,000	1,530,000		
시군비	3,570,000		0	3,570,000	3,570,000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2,688,731	22,688,731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	윤영산 (행) 2820	윤정상 (행) 4666	안지혜 (행) 2826

건축물 분양사업 보고 및 감독업무 추진	정책사업	건축문화 진흥
	단위사업	건축문화 진흥
	세부사업	건축물 분양사업 보고 및 감독업무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4,700천원**(균 14,700)
- ※ 증감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직접 수행 사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소요 재정 병행 이전
- 사 업 량 : 워크숍 2회, 자문회의 5회, 홍보물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시군 건축물 분양사업 지도·감독 및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향상 추진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204호(2021.02.2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건축물 분양사업 업무 일부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이양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축물 분양사업 보고 및 감독업무 추진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 : 11,000천원 · 자문료 등 참석수당 : 4,500천원 – 150천원 × 5회 × 6명 · 업무담당자 워크숍 등 : 6,000천원 – 3,000천원 × 2회 · 회의준비 등 : 500천원 – 100천원 × 5회 ○ 업무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 3,700천원 · 100부 × 37천원	
2021년 총사업비	14,700천원(균 14,7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4,700		0	14,700	14,700		신규
국 비	14,700		0	14,700	14,700		균특
도 비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윤영산 (행) 2820	이정호 (행) 4642	안동수 (행) 4664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정책사업	건축문화 진흥
	단위사업	건축문화 진흥
	세부사업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63,993천원**(국 279,993, 도 84,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840,000천원
 - ※ 증감사유 :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21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화재취약건축물 21동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1개 시군
- 사업 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건축물 관리법 제27조 및 제29조[시행 2021.4.1.][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개정]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총 21동) ○ 천안시(6동) : 240,000천원(국 79,998, 도 24,000, 시군 55,998, 자부담 80,004) ○ 공주시(1동) : 40,000천원(국 13,333, 도 4,000, 시군 9,333, 자부담 13,334) ○ 보령시(2동) : 80,000천원(국 26,666, 도 8,000, 시군 18,666, 자부담 26,668) ○ 아산시(2동) : 80,000천원(국 26,666, 도 8,000, 시군 18,666, 자부담 26,668) ○ 서산시(2동) : 80,000천원(국 26,666, 도 8,000, 시군 18,666, 자부담 26,668) ○ 당진시(1동) : 40,000천원(국 13,333, 도 4,000, 시군 9,333, 자부담 13,334) ○ 금산군(1동) : 40,000천원(국 13,333, 도 4,000, 시군 9,333, 자부담 13,334) ○ 부여군(1동) : 40,000천원(국 13,333, 도 4,000, 시군 9,333, 자부담 13,334) ○ 서천군(2동) : 80,000천원(국 26,666, 도 8,000, 시군 18,666, 자부담 26,668) ○ 예산군(2동) : 80,000천원(국 26,666, 도 8,000, 시군 18,666, 자부담 26,668) ○ 태안군(1동) : 40,000천원(국 13,333, 도 4,000, 시군 9,333, 자부담 13,334)	
2021년 총사업비	840,000천원(국 279,993, 도 84,000, 시군 195,993, 자부담 280,01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840,000		0	840,000	840,000		신규
국 비	279,993		0	279,993	279,993		국고
도 비	84,000		0	84,000	84,000		
시군비	195,993		0	195,993	195,993		
자부담	280,014		0	280,014	280,014		

* 부담비율 : 국비 33%, 도비 10%, 시군비 23%, 자부담 3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4,666	34,538	128	99.6%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윤영산 (행) 2820	이정호 (행) 4642	이기원 (행) 282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가사업	정책사업	건축문화 진흥
	단위사업	건축문화 진흥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가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공건축물 노후화로 실내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시대 신성장 동력인 한국형 그린뉴딜사업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1. 12. 31.(다년도 사업)
- 예 산 액 : **328,986천원**(국 291,507 도 37,479)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416,437천원
 - ※ 증감사유 : 국토부 공모사업(2020년도 선정·지원) 시행 중 추가지원 결정
- 사업 량 : 총 3동, 에너지성능향상, 효율 및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당진시
- 사업 내용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보건소(지소), 시군 의료원, 어린이집의 단열·창호 보강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 지원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가사업(총 3동) ○ 천안시(2동) : 229,669천원(국 160,769, 도 20,670, 시 48,230) ○ 당진시(1동) : 186,768천원(국 130,738, 도 16,809, 시 39,221)	
2021년 총사업비	416,437천원(국 291,507, 도 37,479, 시군 87,45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8,296,480	7,880,043	0	416,437	416,437		
국 비	5,807,536	5,516,029	0	291,507	291,507		국고
도 비	746,683	709,204	0	37,479	37,479		
시군비	1,742,261	1,654,810	0	87,451	87,451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기투자액은 천안시, 당진시에 대한 기투자액임. ('20년 시군비 등 포함 전체 사업비 28,719,924천원)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2,688,731	22,688,731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	윤영산 (행) 2820	윤정상 (행) 4666	안지혜 (행) 2826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정책사업	공공디자인 선진화
	단위사업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부 150,000천원)
- ※ 증감사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기금보조금 전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년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할당 사업 예산
- 사 업 량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등
- 지원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 ①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 10,000천원 × 15개 시군 = 15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150,000천원(부 1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50,000		0	150,000	150,000		신규
국 비							
도 비							
부담금등	150,000		0	150,000	150,000		기금
시군비							

* 부담비율: 부담금(기금) 100%

** 재원설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할당 예산이 '20년 말 교부되어 '부담금등'으로 표기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추경1회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윤영산 (행) 2820	박신 (행) 4643	김혜란 (행) 2823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정책사업	공공디자인 선진화
	단위사업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보급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부 150,000천원)
 - ※ 증감사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기금보조금 전입,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2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할당 사업 예산
- 사 업 량 : 옥외광고 게시대 설치·정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등 교체 및 신설
- 지원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 ①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용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 10,000천원 × 15개 시군 = 15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150,000천원(부 1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50,000		0	150,000	150,000		신규
국 비							
도 비							
부담금등	150,000		0	150,000	150,000		기금
시군비							

* 부담비율 : 부담금(기금) 100%

** 재원설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할당 예산이 '20년 말 교부되어 '부담금 등'으로 표기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윤영산 (행) 2820	박신 (행) 4643	김혜란 (행) 2823

광고물 현황조사, 방지판 부착, 안전점검 관리 지원사업	정책사업	공공디자인 선진화
	단위사업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광고물 등 관리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20,000천원**(부 120,000천원)
 - ※ 증감사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기금보조금 전입,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할당 사업 예산
- 사 업 량 : 불법광고물 방지판 부착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광고물 현황조사, 방지판 부착, 안전점검 관리 지원
- 지원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 ①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고물 등 관리 지원사업 ○ 8,000천원 × 15개 시군 = 12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120,000천원(부 1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20,000		0	120,000	120,000		신규
국 비							
도 비							
부담금등	120,000		0	120,000	120,000		기금
시군비							

* 부담비율 : 부담금(기금) 100%

** 재원설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할당 예산이 '20년 말 교부되어 '부담금 등'으로 표기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윤영산 (행) 2820	박신 (행) 4643	김혜란 (행) 2823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정책사업	공공디자인 선진화
	단위사업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 및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63,993천원**(부 163,993천원)
- ※ 증감사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기금보조금 전입,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2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할당 사업 예산
- 사 업 량 : 광고물 제작·설치비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비 지원
- 지원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 ①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 15개 시군에 169,993천원 지원 - 1개 시군: 169,993천원/15시군 ≍ 10,933천원 지원	
2021년 총사업비	163,993천원(부 163,99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63,993		0	163,993	163,993		신규
국 비							
도 비							
부담금등	163,993		0	163,993	163,993		기금
시군비							

* 부담비율 : 부담금(기금) 100%

** 재원설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할당 예산이 '20년 말 교부되어 '부담금 등'으로 표기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윤영산 (행) 2820	박신 (행) 4643	김혜란 (행) 2823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
	세부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촌장애인 주거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56,720천원**(국 197,600, 도 159,120) [기정 312,130천원 → 경정 356,72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728,000천원
 - ※ 증감사유 : 국토부 국고보조금 확정('21년 3월)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사 업 량 : 104가구(기정 91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 설치
- 지원 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 대상가구 : 104가구 (1~6급 등록장애인, 가구당 지원액(현물) : 7,000천원 이내) ※ 부담비율 : (국비) 27% : (도비) 22% : (시군비) 51%	
총사업비	728,000천원(국 197,600, 도 159,120, 시군 371,28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728,000		637,000	728,000	91,000		
국 비	197,600		172,900	197,600	24,700		국고
도 비	159,120		139,230	159,120	19,890		
시군비	371,280		324,870	371,280	46,410		
기 타							

* 보조율 : 국비 27%, 도비 22%, 시군비 5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12,130	312,13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팀	윤영산 (행) 2820	조정림 (행) 4645	정은주 (행) 4655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
	세부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공공 임대 주택의 시설 개선
- 사업 위치 : 보령시,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28,000천원**(기금 190,000, 도 38,000) [기정 276,000 → 경정 228,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445,000천원
 - ※ 증감 및 재원변경사유 : 기존 국비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원 변경, 부담비율 변경('20년 12월)에 따른 사업비 감소
- 사업 량 :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 140세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세대내부) 도배, 전등·수전·신발장 교체, 창호류 및 욕실 개선,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
 - (주민공용시설) 창호류, 배관, 소방기계·전기 설비 등 노후 시설 교체, CCTV성능개선, 장애인시설개선 등
- 지원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8조,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6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6조(주거복지사업)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 보령시 갈매기아파트 : 45,000천원(기금 20,000, 도 4,000, 시군 21,000) ○ 홍성군 개나리아파트 : 400,000천원(기금 170,000, 도 34,000, 시군 196,000)	
총사업비	445,000천원(기금 190,000, 도 38,000, 시군 21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445,000		696,000	445,000	△251,000		
국 비	190,000		190,000	190,000	-		주택도시기금
도 비	38,000		86,000	38,000	△48,000		
시군비	217,000		420,000	217,000	△203,000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28%인 88,665천원 보다 시군비 초과부담)
(기정비율: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10,000	71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팀	윤영산 (행) 2820	조정림 (행) 4645	전유리 (행) 2825

새뜰마을 환경 개선 사업(서천)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주거환경 개선
	세부사업	취약지역개조(도시)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재해·위생·안전 등 취약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한 노후 불량 주거여건 개선
- 사업 위치 : 서천군
- 사업 기간 : 2019. 1. 1. ~ 2024.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88,457천원**(균 1,053,000, 도 135,457) [기정 973,957천원 → 경정 1,188,457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1,504,357천원
 - ※ 증감사유 : 서천군 '21년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증액
- 사업 량 : 새뜰마을사업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안전확보(마을안길, 보안등, CCTV, 소화기,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케어, 주택정비 등)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 제34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새뜰마을 환경 개선 사업 ○ 서천군 1,504,357천원(균 1,053,000, 도 135,457, 시군 315,900)	
2021년 총사업비	1,504,357천원(균 1,053,000, 도 135,457, 시군 315,9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7,375,000	2,787,000	1,232,857	1,504,357	271,500	3,083,643	
국 비	5,162,000	1,951,000	863,000	1,053,000	190,000	2,158,000	균특
도 비	664,000	251,000	110,957	135,457	24,500	277,543	
시군비	1,549,000	585,000	258,900	315,900	57,000	648,100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90,000	79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윤영산 (행) 2820	김홍대 (행) 4644	이형기 (행) 282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주거환경 개선
	세부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이주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42,000천원**(국 30,000, 도 12,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60,000천원
 - ※ 증감사유 : 국토교통부 '21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업 량 : 50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 사업 내용 :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이주 지원
- 지원 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대상가구 : 50가구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 가구당 지원액(현물) : 100만원 이내 도배·장판, 50만원 이내 이사비용, 50만원 이내 임대료, 30만원 이내의 기초생활지원 등	
총사업비	60,000천원(국 30,000원, 도 12,000, 시군 18,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60,000		0	60,000	60,000		신규
국 비	30,000		0	30,000	30,000		국고
도 비	12,000		0	12,000	12,000		
시군비	18,000		0	18,000	18,000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추경1회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팀	윤영산 (행) 2820	조정림 (행) 4645	정은주 (행) 4655

소규모 재생사업 발생이자 반납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반환금기타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8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소규모 재생사업 국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3천원**(도 303)
 - ※ 증감사유 : '18년 하반기 사업 선정되어 국고보조금(국토부)을 교부('18년 12월)받아 '19년 본예산에 편성 불가하여 이후 '19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그동안의 국비 이자 발생액 계상
- 사 업 량 : 소규모 재생사업 1개소(공주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소규모 재생사업 1개소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 지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소규모 재생사업 발생이자 반납 ○ 발생이자 : 303천원 · 교부년도 : 2018년 12월(국고보조금 172,000천원) · 발생년도 : 2018. 12. ~2019. 4.(107일) · 예금이율 : 2018년(0.6%), 2019년(0.6%) · 산출근거 : 172,000천원(교부액) * 0.6%(이율) / 365 * 107일 = 303천원	
2021년 총사업비	303천원(도 30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03		0	303	303		신규
국 비							
도 비	303		0	303	303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추경1회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윤영산 (행) 2820	김홍대 (행) 4644	이형기 (행) 2824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1.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6
2.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78
3.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80
4.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82
5.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	84
6. 시외버스 재정지원(고용유지)	86
7. 저상버스 도입 지원	88
8.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지원	90
9. 택시콜센터 구축사업	92
10. 택시장비 개선 확충 사업	94
11.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영 지원	96
12. 택시 감차보상 지원	98
13.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	100
14.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	102
15.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	104
16.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	106
17. 버스 종사자 방역 물품(마스크) 지원(성립전) ..	108
18.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균특)	110

1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2
2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군)	114
21.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군)(성립전)	116
22.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118
23.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20
24.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	122
25.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	124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 개요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의 비수익노선 운행보전 지원금 등 ※ 산출기초 － 운행원가손실 지원: 111,489,578천원(18개 운송사 연간손실액) - 74,504,485천원(재정지원금*) = 36,985,093천원 ≒ 36,666,667천원(도 8,000,000+3,000,000, 시군 18,666,667+ 7,000,000)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벽지노선 지원, 노인 등 무료환승 지원, 무료환승 보전 등 － 대폐차비 지원: 100대 기준 대당 16.7백만원 지원(도 500,000, 시군 1,166,667)	
2021년 총사업비	38,333,334천원(도 11,500,000, 시군 26,833,334)	

-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의 비수익노선 운행보전 지원금 등

※ 산출기초

- 은행원가손실 지원: 111,489,578천원(18개 운송사 연간손실액) - 74,504,485천원(재정지원금) = 36,985.093천원 ≒ 36,666,667천원(도 8,000,000+3,000,000, 시군 18,666,667+ 7,000,000)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벽지노선 지원, 노인 등 무료환승 지원, 무료환승 보전 등

- 대폐차비 지원: 100대 기준 대당 16.7백만원 지원(도 500,000, 시군 1,166,667)

38,333,334천원(도 11,500,000, 시군 26,833,33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8,333,334		28,333,334	38,333,334	10,000,000		
국 비							
도 비	11,500,000		8,500,000	11,500,000	3,000,000		
시군비	26,833,334		19,833,334	26,833,334	7,000,000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500,000	9,50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완료
2020년 (2021~2025)	-	-	-	-	-	-	2021. 5월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재식 (행) 4567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지급으로 시내버스 교통비 할인 지원을 통한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2,591천원**(국 42,591) [기정 15,000천원 → 경정 42,591천원]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85,182천원
 ※ 증감사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추가 예산배정으로 총사업비 증가
- 사 업 량 : 천안시, 아산시 운행 시내·농어촌버스 카드결제 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아산시장
- 사업 내용 :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여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800m 기준, 1회 250원 교통비 보조로 인당 월 최대 11,000원 교통비 할인금 보전
- 지원 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 교통비 할인금 보전(국 50%, 시군 50%) ※ 산출기초 ◦ 2,241명 × 38천원 = 85,182천원	
2021년 총사업비	85,182천원(국 42,591, 시군 42,59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85,182		30,000	85,182	55,182		
국 비	42,591		15,000	42,591	27,591		국고
도 비							
시군비	42,591		15,000	42,591	27,591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255	4,255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재식 (행) 4567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벽지노선 운행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내 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사내·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 지원으로 이용객 교통권 확보
- 사업 위치 : 14개 시·군 벽오지 운행노선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705,620천원**(균 2,178,500, 도 1,527,120) [기정 2,672,400천원 → 경정 3,705,620천원]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7,268,900천원
-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국토부 '벽지노선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기준완화로 벽지노선 대상이 확대되어 총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교부결정에 따라서 재원변경(국고 일반회계 → 국가균특보조금)
- 사 업 량 : 14개 시·군 운행 벽지노선 250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 사업 내용 : 도민 교통취약지역 불편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가 명한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
-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 산출기초 - 250개 벽지노선 손실액 보전(운송원가 9,620백만원- 수입금 2,253.5백만원) ≙ 7,268,9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7,268,900천원(국 2,178,500 도 1,527,120, 시군 3,563,28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7,268,900		5,240,000	7,268,900	2,028,900		
국 비	2,178,500		1,572,000	2,178,500	606,500		균특
도 비	1,527,120		1,100,400	1,527,120	426,720		
시군비	3,563,280		2,567,600	3,563,280	995,680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93,900	1,093,9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재식 (행) 4567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위치 : 3개 시·군

○ 예 산 액 : 1,947,000천원(균 1,947,000) [기정 5,659,150천원 → 경정 1,947,000천원]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당초 4개소 신청하였으나 최종 3건 반영되어 국비가 감소, 교부결정에 따라
재원변경(국고 일반회계 → 국가균특보조금)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 내용 : 신규 차고지 조성 및 확충, 차고지 내 휴게시설 및 식당·샤워실 등 편의시설 확충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부대시설비, 기타관리비 등 ※ 산출기초 ◦ 보령시 공영차고지 설치비 : 3,794백만원 ◦ 서천군 공영차고지 설치비 : 2,073백만원 ◦ 청양군 공영차고지 설치비 : 1,105백만원	
2021년 총사업비	6,972,000천원(국 1,947,000, 시군 5,02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0,260,000	22,288,000	18,863,830	6,972,000	△11,891,830	1,000,000	
국 비	8,932,250	6,685,250	5,659,150	1,947,000	△3,712,150	30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21,327,750	15,602,750	13,204,680	5,025,000	△8,179,680	700,000	
기 록							

* 부담비율 : 국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120,000	3,12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재식 (행) 4567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버스운전자 양성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수한 운전인력 양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교통운송서비스 제고 등 일자리 창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교통연수원(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3)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 285,700천원 → 경정 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0천원(사업비 전액 삭감)
 -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2021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신청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사업참여 불가('20년 신청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 업 량 : 버스운전자 양성 70명
- 사업시행방법 : 충남교통연수원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 지원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등)

④ 국가는 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 사업참여 불가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	
2021년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85,700		285,700	0	△285,700		
국 비	228,560		228,560	0	△228,560		
도 비	57,140		57,140	0	△57,140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80%, 도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85,700	285,7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의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한상호 (행) 2840	박지훈 (행) 4566	정종필 (행) 4578

시외버스 재정지원(고용유지)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운수업계보조금(307-09)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에 따른 시외버스 노선 휴업, 감회 최소화 등 필요불가결한 사항에서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버스업계 고용유지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00천원**(도 2,000,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2,000,000천원
 - ※ 증감사유: 코로나19 재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악화, 정리해고 없는 고용유지 지원
- 사 업 량 : (주)금남고속 등 5개 업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3조 ~ 제4조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5. 그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외버스 고용유지지원 ○ 고용유지지원 중단 기간 지원 : 298명(운수종사자) × 60일 ¹⁾ × 6만6천원 ²⁾ ≒ 11억원 1) 5개 업체 최소 공통 기간,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1일 상한액 ○ 감차 방지 인건비 지원 : 317대 ³⁾ × 60일 × 4만9천원 ⁴⁾ ≒ 9억원 3) 휴업차량 4) 1대당 인건비	
2021년 총사업비	2,000,000천원(도 2,0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000,000		0	2,000,000	2,000,000		신규
국 비							
도 비	2,000,000		0	2,000,000	2,000,000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50,000	899,051	150,949	86%		예비비 지원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완료
2020년 (2021~2025)	-	-	-	-	-	-	2021. 5월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강진애 (행) 2842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저상버스 도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31,500천원**(국 1,231,500) [기정 1,397,604천원 → 경정 1,231,5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9,939,000천원
 - ※ 감액 사유 : 국비 교부대수 조정(31대→27대 : 보령, 논산 사업포기, 아산 교부대수 조정)
- 사 업 량 : 27대 (천안시 12대, 공주시 3대, 아산시 10대, 당진시 2대)
- 사업시행방법 : 4개 지방자치단체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 사업 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 지원 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보장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저상버스의 구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9,939,000천원(국 1,231,500, 시 2,627,500, 버스사 6,080,000) ◦ [24대×46,000천원(1대 당)=1,104,000천원] + 2,500,000천원(시) + 5,780,000천원(버스사) ◦ [3대 ×42,500천원(1대 당)=127,500천원] + 127,500천원(시) + 300,000천원(버스사)	
2021년 총사업비	9,939,000천원(국 1,231,500, 시군 2,627,500, 버스사 부담 6,0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9,939,000		10,339,000	9,939,000	△400,000		
국 비	1,231,500		1,397,604	1,231,500	△166,104		국고
도 비							
시군비	2,627,500		1,397,604	2,627,500	1,229,896		
자부담	6,080,000		7,543,792	6,080,000	△1,463,792		버스회사

* 부담비율 : 국비50%, 시군비 50% 원칙이나, 시군비 추가투입 가능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86,092	586,09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2840	정문수 (행)4577	강진애 (행)2842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특별교통수단 확대도입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6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9,300천원**(국 161,000, 도 48,300) [기정 325,000천원 → 경정 209,3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322,000천원
 - ※ 증감사유 : 국토부 수요조사 시 10대 신청하였으나 최종 7건 반영되어 사업량 감소
- 사 업 량 : 특별교통수단 7대(천안 2, 공주 1, 아산 1, 논산 1, 금산 1, 홍성 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
- 사업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 지원 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 : 322,000천원(국비 161,000, 도비 48,300, 시군비 112,700) - 특별교통수단 : 7대×46,000천원(대당 구입단가)×65%(국·도비부담비율) = 209,3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322,000천원(국비 161,000 도비 48,300, 시군비 112,7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22,000		500,000	322,000	△178,000		
국 비	161,000		250,000	161,000	△89,000		국고
도 비	48,300		75,000	48,300	△26,700		
시군비	112,700		175,000	112,700	△62,300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61,500	661,5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한상호 (행) 2840	최기호 (행) 4561	최하나 (행) 4563

택시콜센터 구축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당진시 택시콜센터 구축을 위한 콜센터 내 장비 설치 지원
- 사업 위치 : 당진시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도 40,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80,000천원
- ※ 증감사유 : 택시 콜센터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콜센터 내 장비 설치
- 사 업 량 : 당진시 콜센터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 사업 내용 : 당진시 택시콜센터 내부 장비 설치 지원
- 지원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당진시 택시콜센터 구축사업 ※ 산출기초 : 택시콜센터(1개소) = 80,000천원 - PC : 7,700천원 - 콜 센터서버 : 9,000천원×2 = 18,000천원 - UPS : 4,400천원 - 키 폰 주장치 : 10,310천원 - 방화벽 : 12,540천원 - 전자지도 : 4,400천원 - 비품 : 22,650천원	
2021년 총사업비	80,000천원(도 40,000, 시군 4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80,000		0	80,000	80,000		신규
국 비							
도 비	40,000		0	40,000	40,000		
시군비	40,000		0	40,000	40,000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완료
2021년 (2021~2025)	-	-	-	-	-	-	2021. 5월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단비 (행) 4568

택시장비 개선 확충 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택시 노후 장비 교체로 택시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당진시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80,000천원**(도 80,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160,000천원
 - ※ 증감사유 :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노후 장비 교체지원
- 사 업 량 : 택시 32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 사업 내용 : 당진시 택시 내부 노후 장비(내비게이션) 교체
- 지원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8.14.>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당진시 택시장비 개선 확충 사업 ※ 산출기초 : 택시 장비(내비게이션) = 160,000천원 - 내비게이션 500천원 x 320대 = 16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160,000천원(도 80,000, 시군 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60,000		0	160,000	160,000		신규
국 비							
도 비	80,000		0	80,000	80,000		
시군비	80,000		0	80,000	80,000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완료
2021년 (2021~2025)	-	-	-	-	-	-	2021. 5월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단비 (행) 4568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운영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택시요금미터·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실시간 수집·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택시정책 수립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 68,150천원 → 경정 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0천원
-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충청남도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간 위·수탁협약 내용 정정으로 시군에서 직접 운영비 지원으로 전액 삭감
- 사 업 량 : 도내 택시 6,410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지원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8.14.>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운영 지원 ○ 0천원	
2021년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0		68,150	0	△68,150		
국 비							
도 비							
부담금등	0		68,150	0	△68,150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군비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본예산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단비 (행) 4568

택시 감차보상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감차보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업구역별 적정대수를 초과한 택시면허를 감차하여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잉 공급 해소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 위치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198,900천원(국 198,900)** [기정 195,000천원 → 경정 198,9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663,000천원
 - ※ 증감 사유 : 택시감차대수 수요량 1대분(3,900천원) 국비 증가
- 사업량 : 51대(공주시 6대, 보령시 4대, 논산시 17대, 금산군 5대, 부여군 9대, 서천군 1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사업 내용 :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
- 지원 근거 : 택시발전법 제7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택시 감차보상 지원 ○ 산출기초 : 51대(감차대수) × 13,000천원(대당 지원 단가)* = 663,000천원 * 대당 지원 단가 = 13,000천원[국비 3,900(30%), 시군비 9,100(70%)]	
2021년 총사업비	663,000천원(국 198,900, 시군 464,1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663,000		650,000	663,000	13,000		
국 비	198,900		195,000	198,900	3,900		국고
도 비							
시군비	464,100		455,000	464,100	9,100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08,100	308,1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단비 (행) 4568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대중교통시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서천군 버스 배차시간이 길어 장기간 버스승강장에 대기해야 하는 버스 이용객의 추위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승강장 및 온열의자 설치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서천군 관내(장항, 마서, 화양, 한산, 기산, 마산 등)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5,000천원(도 35,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70,000천원
 - ※ 증감사유: 서천군내 버스이용 주민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편성
- 사 업 량 : 버스승강장 4개소 및 온열의자 10개소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수
- 사업 내용 : 서천군 관내에 버스승강장 및 온열의자 설치
- 지원 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천군 버스승강장 및 온열의자 설치 ○ 버스승강장 4개소 및 온열의자 10개소 구입 및 설치 ※ 산출기초 : 10,000천원(승강장) × 4개소, 3,000천원(온열의자) × 10개소	
2021년 총사업비	70,000천원(도 35,000, 시군 3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70,000		0	70,000	70,000		신규
국 비							
도 비	35,000		0	35,000	35,000		
시군비	35,000		0	35,000	35,000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완료
2021년 (2021~2025)	-	-	-	-	-	-	2021. 5월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재식 (행) 4567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286,000천원(국 1,286,000)
- ※ 편성사유: 국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국비 지원
- 사 업 량 :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572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법인택시 운전원 고용·생활안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500천원(원가)×2,572명(법인택시운수종사자 수) = 1,286,000천원 ※ 근속요건 : 20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1.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2021년 총사업비	1,286,000천원(국 1,286,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286,000		0	1,286,000	1,286,000		신규
국 비	1,286,000		0	1,286,000	1,286,000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단비 (행) 4568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804,600천원**(국 1,804,600)
- ※ 편성사유: 국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국비 지원
- 사 업 량 :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578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법인택시 운전원 고용·생활안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700천원(원가)×2,578명(법인택시운수종사자 수) = 1,804,600천원 ※ 근속요건 : 20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2021년 총사업비	1,804,600천원(국 1,804,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804,600		0	1,804,600	1,804,600		신규
국 비	1,804,600		0	1,804,600	1,804,600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단비 (행) 4568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4. 1. ~ 2021. 6.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727,600천원**(국 1,727,600)
- ※ 증감 사유 : 국토교통부 주관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액 반영
- 사 업 량 : 15개 시·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2,468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제 50조(재정 지원)

-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세버스 기사(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 1,727,600천원(국 100%)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2,468명 * 700,000원 = 1,727,600천원 ※ 근속요건 : 20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 4. 2.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2021년 총사업비	1,727,600천원(국1,727,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727,600		0	1,727,600	1,727,600		신규
국 비	1,727,600		0	1,727,600	1,727,600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한상호 (행) 2840	박지훈 (행) 4566	허 영 (행) 4579

버스 종사자 방역물품(마스크)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버스 종사자 방역물품(마스크) 지원
	통 계 목	재료비(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승객과 대면으로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버스 운송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4. 1. ~ 2021. 6. 30.(신규사업)
- 예 산 액 : **203,241천원**(국 203,241)
- ※ 편성사유 : 국토교통부 주관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액 반영
- 사 업 량 : 시내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운송사업 운수종사자 5,615명
- 사업시행방법 : 도 및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 및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버스운송분야 운송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 제 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버스종사자 방역물품(마스크) 지원 : 203,241천원 ○ 버스 종사자 방역물품(마스크) 지원 · 5,615명×80매×450원 = 203,241천원	
2021년 총사업비	203,241천원(국 203,24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03,241		0	203,241	203,241		신규
국 비	203,241		0	203,241	203,241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추경1회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한상호 (행) 2840	박지훈 (행) 4566	허 영 (행) 4579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균특)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공영주차장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및 교통 불편 해소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4,094,000천원**(균 24,094,000) [기정 23,225,000천원 → 경정 24,094,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48,188,000천원
 - ※ 증감사유: '21년 균특사업 확정으로 사업량 증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내용 및 교부액 변경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 3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 시군
- 사업 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 지원 근거 : 「주차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균특보조 50%, 시군 50%) <추경 1회> 1,738,000천원 증액 (균 869,000, 시군 869,000) ◦ 예산읍 산성리 공영주차장 조성 2,800,000천원 [△300,000천원] ◦ 예산군 고덕면 대천1리 공영주차장 조성 1,700,000천원 [증 300,000천원] ◦ 금산군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 1,260,000천원 [증 360,000천원] ◦ 대천2동 마을주차장 조성 800,000천원 [증 200,000천원] ◦ 보령시 대천26통 마을주차장 조성 500,000천원 [△200,000천원] ◦ 금산군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 840,000천원 [△360,000천원] ◦ 서천군 서천읍 공영주차장 조성 2,400,000천원 [△200,000천원] ◦ 서천 장항 공영주차장 조성 1,938,000천원 [증1,938,000천원] <'21년 본예산> 46,450,000천원(균 23,225,000천원 시군 23,225,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48,188,000천원(균 24,094,000, 시군 24,09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48,188,000		46,450,000	48,188,000	1,738,000		
국 비	24,094,000		23,225,000	24,094,000	869,000		균특
도 비							
시군비	24,094,000		23,225,000	24,094,000	869,000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752,000	15,752,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한상호 (행) 2840	조용백 (행) 4571	남정민 (행) 457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차도 분리 및 감속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 보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70,000천원**(균 2,070,000) [기정 1,161,000천원 → 경정 2,07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4,140,000천원
 - ※ 증감사유: '21년 국비지원계획 확정내역 반영
- 사 업 량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7개소(기정 3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2개 시·군
- 사업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설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 개선
- 지원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비용의 지원)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보호구역개선 47개소 - 천안시 3개소 290,000 - 금산군 1개소 400,000 - 공주시 3개소 260,000 - 부여군 2개소 160,000 - 보령시 5개소 400,000 - 청양군 1개소 60,000 - 아산시 8개소 880,000 - 홍성군 6개소 420,000 - 논산시 4개소 240,000 - 예산군 5개소 330,000 - 당진시 6개소 370,000 - 태안군 3개소 330,000	
2021년 총사업비	4,140,000천원(국 2,070,000, 시군 2,07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4,140,000		2,322,000	4,140,000	1,818,000		
국 비	2,070,000		1,161,000	2,070,000	909,000		균특
도 비							
시군비	2,070,000		1,161,000	2,070,000	909,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701,000	1,701,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한상호 (행) 2840	조용백 (행) 4571	조경상 (행) 284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군)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요인제거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감소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시군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80,000천원(국 480,000) [기정 900,000천원 → 경정 48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960,000천원
 - ※ 증감사유: '21년 국비지원계획에 따른 확정내역 반영
- 사 업 량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8개소(당초 9개소 신청)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6개 시·군
- 사업 내용 : 중앙분리대·전방신호기 설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2017~20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군)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8개소 - 천안시 1개소 162,000 - 서산시 1개소 152,000 - 공주시 2개소 230,000 - 당진시 1개소 50,000 - 아산시 2개소 266,000 - 서천군 1개소 100,000	
2021년 총사업비	960,000천원(국 480,000, 시군 4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960,000		1,800,000	960,000	△840,000		
국 비	480,000		900,000	480,000	△42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480,000		900,000	480,000	△42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55,000	355,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한상호 (행) 2840	조용백 (행) 4571	조경상 (행) 2843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군)(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 원활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지방도로 교차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80,000천원**(균 980,000) [기정 560,000천원 → 경정 98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1,960,000천원
 - ※ 증감사유: '21년 국비지원계획 확정내역 반영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7개소(당초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아산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
- 사업 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7개소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2017~20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회전교차로 설치 7개소 - 보령시 2개소 560,000 - 서천군 1개소 280,000 - 아산시 2개소 560,000 - 청양군 1개소 280,000 - 계룡시 1개소 280,000	
2021년 총사업비	1,960,000천원(국 980,000, 시군비 9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960,000		1,120,000	1,960,000	840,000		
국 비	980,000		560,000	980,000	42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980,000		560,000	980,000	42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00,000	7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한상호 (행) 2840	조용백 (행) 4571	조경상 (행) 2843

노인보호구역 개선(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보강·정비를 통해 노인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노인보호구역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00,000천원**(균 1,200,000) [기정 850,000천원 → 경정 1,20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2,400,000천원
 - ※ 증감사유: '21년 국비지원계획 확정내역 반영
- 사 업 량 : 노인보호구역 개선 44개소(당초 3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3개 시·군
- 사업 내용 : 노인보호 도로표지,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최고속도 안전표지, 횡단 보도와 교차로 정비 등
- 지원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 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 노인보호구역 개선 44개소 <table><tr><td>- 천안시 2개소 100,000</td><td>- 금산군 3개소 150,000</td></tr><tr><td>- 공주시 1개소 50,000</td><td>- 부여군 3개소 150,000</td></tr><tr><td>- 보령시 3개소 150,000</td><td>- 서천군 1개소 50,000</td></tr><tr><td>- 아산시 7개소 450,000</td><td>- 홍성군 6개소 300,000</td></tr><tr><td>- 서산시 2개소 100,000</td><td>- 예산군 8개소 500,000</td></tr><tr><td>- 논산시 4개소 200,000</td><td>- 태안군 1개소 50,000</td></tr><tr><td>- 당진시 3개소 150,000</td><td></td></tr></table>	- 천안시 2개소 100,000	- 금산군 3개소 150,000	- 공주시 1개소 50,000	- 부여군 3개소 150,000	- 보령시 3개소 150,000	- 서천군 1개소 50,000	- 아산시 7개소 450,000	- 홍성군 6개소 300,000	- 서산시 2개소 100,000	- 예산군 8개소 500,000	- 논산시 4개소 200,000	- 태안군 1개소 50,000	- 당진시 3개소 150,000		
- 천안시 2개소 100,000	- 금산군 3개소 150,000															
- 공주시 1개소 50,000	- 부여군 3개소 150,000															
- 보령시 3개소 150,000	- 서천군 1개소 50,000															
- 아산시 7개소 450,000	- 홍성군 6개소 300,000															
- 서산시 2개소 100,000	- 예산군 8개소 500,000															
- 논산시 4개소 200,000	- 태안군 1개소 50,000															
- 당진시 3개소 150,000																
2021년 총사업비	2,400,000천원(국 1,200,000, 시군 1,2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400,000		1,700,000	2,400,000	700,000		
국 비	1,200,000		850,000	1,200,000	35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1,200,000		850,000	1,200,000	35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50,000	1,15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한상호 (행) 2840	조용백 (행) 4571	조경상 (행) 2843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280,000천원**(균 11,680,000 부 1,600,000) [기정 6,804,000천원 → 경정 13,28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24,960,000천원
 - ※ 증감사유: '21년 국비지원계획 확정내역 반영 및 교육부 부담금 편성
- 사 업 량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585대(당초 324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 지원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 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 과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585대 <table><tr><td>- 천안시 126대 5,450,000</td><td>- 금산군 11대 510,000</td></tr><tr><td>- 공주시 48대 2,062,000</td><td>- 부여군 40대 1,708,000</td></tr><tr><td>- 보령시 25대 1,166,000</td><td>- 서천군 24대 1,239,000</td></tr><tr><td>- 아산시 62대 2,713,000</td><td>- 청양군 14대 394,000</td></tr><tr><td>- 서산시 60대 2,287,000</td><td>- 홍성군 37대 1,578,000</td></tr><tr><td>- 논산시 25대 1,005,000</td><td>- 예산군 42대 1,790,000</td></tr><tr><td>- 계룡시 2대 76,000</td><td>- 태안군 29대 1,269,000</td></tr><tr><td>- 당진시 40대 1,713,000</td><td></td></tr></table>	- 천안시 126대 5,450,000	- 금산군 11대 510,000	- 공주시 48대 2,062,000	- 부여군 40대 1,708,000	- 보령시 25대 1,166,000	- 서천군 24대 1,239,000	- 아산시 62대 2,713,000	- 청양군 14대 394,000	- 서산시 60대 2,287,000	- 홍성군 37대 1,578,000	- 논산시 25대 1,005,000	- 예산군 42대 1,790,000	- 계룡시 2대 76,000	- 태안군 29대 1,269,000	- 당진시 40대 1,713,000		
- 천안시 126대 5,450,000	- 금산군 11대 510,000																	
- 공주시 48대 2,062,000	- 부여군 40대 1,708,000																	
- 보령시 25대 1,166,000	- 서천군 24대 1,239,000																	
- 아산시 62대 2,713,000	- 청양군 14대 394,000																	
- 서산시 60대 2,287,000	- 홍성군 37대 1,578,000																	
- 논산시 25대 1,005,000	- 예산군 42대 1,790,000																	
- 계룡시 2대 76,000	- 태안군 29대 1,269,000																	
- 당진시 40대 1,713,000																		
2021년 총사업비	24,960,000천원(군 11,680,000, 부 1,600,000 시군 11,6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4,960,000		13,608,000	24,960,000	11,352,000		
국 비	11,680,000		6,804,000	11,680,000	4,876,000		균특
도 비							
부담금등	1,600,000		0	1,600,000	1,600,000		교육부 부담금
시군비	11,680,000		6,804,000	11,680,000	4,876,000		

* 보조율 : 국비 47%, 시군비 47%, 교육부 부담금 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900,600	5,918,000	982,600	85.8%	982,6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한상호 (행) 2840	조용백 (행) 4571	조경상 (행) 2843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2018~2020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시외버스 5개 업체)
- 사업 기간 : 2018.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48,942천원(도 48,942)
 - ※ 증감사유: 반납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 계상
- 사 업 량 :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및 이자(2018~2020년 보조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 지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사업 국비보조금 반환총액 : 48,941,190원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 47,400천원 · 2018년: 32,750천원 / 2019년: 450천원 / 2020년: 14,200천원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 1,541,190원 ※ 산출기초(2018년) · $118,750\text{천원} \times 258\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이율}(0.6\%) + 32,750\text{천원} \times 383\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이율}(0.6\%)$ $+ 32,750\text{천원} \times 609\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이율}(0.7\%) = 1,092,320\text{원}$ ※ 산출기초(2019년) · $80,000\text{천원} \times 143\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이율}(0.6\%) + 450\text{천원} \times 12\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이율}(0.6\%)$ $+ 450\text{천원} \times 609\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이율}(0.7\%) = 193,400\text{원}$ ※ 산출기초(2020년) · $40,000\text{천원} \times 175\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이율}(0.7\%) + 25,800\text{천원} \times 245\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이율}(0.7\%) = 255,470\text{원}$	
2021년 총사업비	48,942천원(도 48,94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48,942		0	48,942	△48,942		
국 비							
도 비	48,942		0	48,942	△48,942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한상호 (행) 2840	박지훈 (행) 4566	박정윤 (행) 2844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18. 1. 1. ~ 2019. 12. 31.
- 예 산 액 : **2,433천원**(도 2,433)
 - ※ 증감사유: 반납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 계상
- 사 업 량 :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및 이자(2018~2019년 보조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 지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국비보조금 반환총액 : 2,432,170원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 2,100,000원 · 2019년: 2,100천원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국비보조금 반환이자 : 332,170원 ※ 산출기초(2018년) · 116,000천원*93일/365*예금율(0.6%) + 23,440천원*383일/365*예금율(0.6%) + 9,200천원*305일/365*예금율(0.6%) = 256,600원 ※ 산출기초(2019년) · 9,200천원*305일/365*예금율(0.6%) + 2,100,000원*731일/365*예금율(0.7%) = 75,570원	
2021년 총사업비	2,433천원(도 2,43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433		0	2,433	△2,433		
국 비							
도 비	2,433		0	2,433	△2,433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한상호 (행) 2840	박지훈 (행) 4566	박정윤 (행) 2844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철도항공과

1.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130
2.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	132
3.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134
4. 국가지원지방도건설(보상비)	136
5.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138
6. 농어촌도로 확포장	140
7. 충청남도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142
8. 위험도로 구조개선	144
9. 위험도로 구조개선(자본보조)	146
10. 지방도 교량안전 진단	148
11. 교차로 개선사업	150
12. 위험도로개량	152
13. 위험교량개량	154
14.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분담액	156
15. 지방이양사무 지원(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158
16.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지원(재무활동)	160
17. 위험교량개량(재무활동)	162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청양~신양IC)
	통 계 목	시설비및부대비(40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예방 및 신양IC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청양군과 세종시·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상생발전 기틀 마련
- 사업 위치 : 청양군 청양읍 교원리 ~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국지도70호)
- 사업 기간 : 2017년 ~ 2023(다년도 계속사업)
- 예산액 : 4,213,428천원(균 1,199,000 도 114,428 채 2,900,000) [기정 4,214,428천원 → 경정 4,213,428천원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21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21.2.24.)에 따른 국비 조정 반영,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기 확보 예산재원대체(도비→지방채)
- 사업량 : 2차로 확장 L=16.2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70호선/청양~신양IC) 건설 [연장 16.2km, 폭 2차로(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4,213,428천원) ○ 시설비 : 3,927,714천원(균 999,000, 도 28,714, 채 2,900,000) ○ 감리비 : 275,714천원(균 193,000, 도 82,714) ○ 시설부대비 : 10,000천원(균 7,000, 도 3,000)	
2021년 총사업비	4,213,428천원(국 1,199,000천원, 도 114,428천원, 채 2,9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52,714,000	42,363,143	4,214,428	4,213,428	△1,000	6,137,429	계속비
국 비	30,115,000	24,620,000	1,200,000	1,199,000	△1,000	4,296,000	균특
도 비	19,699,000	17,743,143	3,014,428	114,428	△2,900,000	1,841,429	
시군비							
기 타	2,900,000	0	0	2,900,000	2,900,000		지방채

* 부담비율 : 공사비(국비70%, 도비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277,603	7,080,187	3,197,416	69%	3,197,41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안병수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이호~양곡)
	통 계 목	시설비및부대비(401-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간 교통불편 해소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 판교리(국지도96호)
- 사업 기간 : 2016년 ~ 2023년(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834,143천원**(균 1,977,000 도 857,143) [기정 2,857,143천원 → 경정 2,834,143천원]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21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21.2.24.)에 따른 국비 조정 반영
- 사 업 량 : 2차로 확장 L=4.845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96호선/이호~양곡) 건설 [연장 4.845km, 폭 2차로(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 (2,834,143천원) ○ 시설비 : 2,691,286천원(균 1,877,000, 도 814,286) ○ 감리비 : 142,857천원(균 100,000, 도 42,857)	
2021년 총사업비	2,834,143천원(균 1,977,000천원, 도 857,14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4,226,505	20,184,505	2,857,143	2,834,143	△23,000	1,207,857	계속비
국 비	13,370,605	10,594,505	2,000,000	1,977,000	△23,000	799,100	균특
도 비	10,855,900	9,590,000	857,143	857,143	-	408,757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공사비(국비70%, 도비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767,096	3,860,317	2,906,779	57%	2,906,77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안병수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당진~서산)
	통 계 목	시설비및부대비(401-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70호선 내 성연~운산과 합덕~우강 미연계에 따른 교통 불편 조기 해소
- 사업 위치 :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9년 ~ 2027년(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528,429천원**(국 5,829,000 도 299,429, 채 6,400,000) [가정 11,814,143천원 → 경정 12,528,429천원]
※ 증감사유: '21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21.2.24.)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매칭사업비 반영,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기 확보 예산재원대체(도비→지방채)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19.1km, B=17.5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70호선/당진~서산) 건설 [연장 19.1km, 폭 4차로(17.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12,528,429천원) ○ 시설비 : 12,242,429천원(국 5,629,000, 도 213,429, 채 6,400,000) ○ 감리비 : 286,000천원(국 200,000, 도 86,000)	
2021년 총사업비	12,528,429천원(국 5,829,000천원, 도 299,429천원, 채 6,4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10,272,000	29,309,730	11,814,143	12,528,429	714,286	68,433,841	계속비
국 비	78,000,900	24,713,000	5,329,000	5,829,000	500,000	47,458,900	균특
도 비	25,871,100	4,596,730	6,485,143	299,429	△6,185,714	20,974,941	
시군비							
기 타	6,400,000	0	0	6,400,000	6,400,000		지방채

* 부담비율 : 공사비(국비70%, 도비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031,778	5,809,480	7,222,298	45%	7,222,2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안병수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국가지원지방도건설(보상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보상비)
	통 계 목	시설비및부대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계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국지도
- 사업 기간 : 2018. ~ 2028.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800,000천원**(채 20,800,000) [기정 도 20,800,000천원 → 경정 채 20,800,000천원]
※ 증감사유: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기 확보 예산재원대체
- 사 업 량 : 국지도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 1식
- 지원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4조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보상비) (20,800,000천원) ○ 당진~서산 국지도건설(보상비) : 20,000,000천원 ○ 성환~입장 국지도건설(보상비) : 500,000천원 ○ 우성~이인 국지도건설(보상비) : 100,000천원 ○ 장척~목현 국지도건설(보상비) : 100,000천원 ○ 임천~강경 국지도건설(보상비) : 10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20,800,000천원(채 20,8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22,095,000	76,427,000	20,800,000	20,800,000	0	24,868,000	
국 비							
도 비	101,295,000	76,427,000	20,800,000	0	△20,800,000	24,868,000	
시군비							
기 타	20,800,000	0	0	20,800,000	20,800,000		지방채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2,665,309	42,564,724	100,585	99.8%	100,58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안병수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도로교통업무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지하개발 등을 위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 1,415천원 → 경정 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0천원
 - ※ 증감사유: 업무 이관(도로철도항공과 → 건설정책과)에 따른 예산 감액
- 사 업 량 : 위원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및 참석위원 수당 지급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수당)

- 제3조(수당)** ①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하안전위원회 운영(0천원) ○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전액삭감	
2021년 총사업비	0천원(도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0		1,415	0	△1,415		
국 비							
도 비	0		1,415	0	△1,415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15	900	515	64.6%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 원 (행) 4683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촌도로 정비 등 도비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통행불편 등 민원해소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190,000천원(도 2,190,000 부 13,000,000) [기정 15,000,000천원 → 경정 15,19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30,380,000천원(도 2,190,000 부 13,000,000, 시군 15,190,000)
- ※ 증감사유: 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비지원 요청 따른 사업비 증액,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 부족에 따라 기 확보 예산재원대체(도비→지역개발기금 용자)
- 사 업 량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60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지원 [1회 추경] : 380,000천원(도 190,000, 시군 190,000) <천안시> 1개 지구, 150,000천원 ○ 조송아파트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150,000천원 <아산시> 1개 지구, 130,000천원 ○ 시도20호선(호서로) 노후도로 정비공사: 130,000천원 <당진시> 2개 지구, 100,000천원 ○ 우강면 농어촌도로 304호선(성원리) 도로보수 공사: 50,000천원 ○ 우강면 농어촌도로 1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00천원 [본예산] <본예산> 56개 지구, 30,000,000천원	
총사업비	30,380,000천원(도 2,190,000천원, 부 13,000,000천원 시군 15,19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0,380,000		30,000,000	30,380,000	380,000		
국 비							
도 비	2,190,000		15,000,000	2,190,000	△12,810,000		
시군비	15,190,000		15,000,000	15,190,000	190,000		
부담금등	13,000,000		0	13,000,000	13,000,000		지역개발기금

* 부담비율 : 도비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6,044,500	16,044,5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완료
2020년 (2021~2025)	-	-	-	-	-	-	2021. 5월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안병수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이효승 (행) 4675

충청남도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충청남도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통 계 목	연구개발비(207-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의 특성을 살리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한 자율주행차 도입과, 정부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과 범부처 신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 및 타당성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7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0,000천원**(도 70,000)
- ※ 증감사유: 충청남도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
- 사 업 량 : 충청남도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청남도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경쟁력 검토, 자율주행 미래비전 제시 등
- 지원 근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70,000천원) ○ 학술분야 : 70,000천원(인건비 46,257천원, 경비 등 23,743천원)	
2021년 총사업비	70,000천원(도 7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70,000		0	70,000	70,000		신규
국 비							
도 비	70,000		0	70,000	70,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2021. 4월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안병수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위험도로 구조개선(자체)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통 계 목	시설비및부대비(40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요인 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 사업 위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곡리 등 6개소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898,000천원**(국 2,349,000 도 4,549,000) [기정 7,198,000천원 → 6,898,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6,898,000천원
-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 21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 수요조사 시 행안부에 국비 2,649백만원 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2,349백만원 반영되어 국비 교부('21.1.22.)
- 사 업 량 : 위험도로 구조개선 6개소(지방도 5개소, 국지도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6개소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도로 선형개량 및 위험도로 개선 6개소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35조의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1.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융자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 6,898,000천원 ○ 시설비 : 6,878,000천원 - 선형개량(지방도, 국지도) 6개소 · 우곡도로 선형개량(지799호) = 849,000천원 · 관리도로 선형개량(지603호) = 1,795,000천원 · 석막도로 선형개량(국지68호) = 1,396,000천원 · 천을도로 선형개량(지635호) = 796,000천원 · 노성도로 선형개량(지645호) = 798,000천원 · 포지도로 선형개량(지603호) = 1,244,000천원 - 부대경비 : 2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6,898,000천원(국 2,349,000, 도 4,54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2,555,000	9,776,000	7,198,000	6,898,000	△300,000	15,881,000	계속비
국 비	14,260,000	5,251,000	2,649,000	2,349,000	△300,000	6,660,000	균특
도 비	18,295,000	4,525,000	4,549,000	4,549,000	-	9,221,000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보조(국비50%, 도비 50%), 자체(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513,845	6,829,920	4,683,925	59.3%	4,683,92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중원 (행) 4682

위험도로 구조개선(보조)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요인 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00,000천원(균 400,000) [기정 500,000천원 → 경정 400,000천원]
 ※ 증감사유 : 21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 수요조사 시 행안부에 국비 500백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400백만원 반영되어 국비 교부('21.1.22.)
- 사 업 량 : 위험도로 구조개선 1개소(시도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1개소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지방도로 선형개량 및 위험도로 개선 1개소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35조의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1.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융자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 800,000천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 800,000천원(시비400,000천원 포함) - 선형개량(시도) 1개소 · 신창도로 선형개량(시도21호) = 800,000천원(시비400,000천원 포함)	
2021년 총사업비	800,000천원(균 400,000, 시군 4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600,000	1,400,000	1,000,000	800,000	△200,000	1,400,000	계속비
국 비	1,800,000	700,000	500,000	400,000	△100,000	70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1,800,000	700,000	500,000	400,000	△100,000	700,000	
기 타							

* 부담비율 : 보조(국비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00,000	7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2020년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중원 (행) 4682

지방도 교량안전 진단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교량안전을 통한 재난 위험요인 해소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국지도 및 지방도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669,807천원**(소 617,000, 부 52,807)
- ※ 증감사유: 추가 교량안전점검 (소방안전교부세+부담금) 반영
- 사 업 량 : 교량 안전점검 1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추진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15조, 제31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특법」 제11조, 제12조

「도로법」 제15조, 제31조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교량안전 진단 : 669,807천원 <1회 추경> 지방도 교량안전 점검 및 진단 669,807천원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13개소 669,807천원 (소방안전교부세)	
2021년 총사업비	669,807천원(소 617,000, 부 52,80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669,807		0	669,807	669,807		신규
국 비	617,000		0	617,000	617,000		소방
도 비							
시군비							
부담금등*	52,807		0	52,807	52,807		

※ 2020년 잉여금 처리된 재난실 소관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 원 (행) 4683

교차로 개선사업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내 교차로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도모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국지도 및 지방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00,000천원**(부 1,800,000) [기정 도 1,800,000천원 → 경정 부 1,800,000천원]
 ※ 재원변경사유: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기 확보 예산재원대체(도비→ **기금**)
- 사 업 량 : 교차로 개선사업(6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교차로 개선사업(6개 사업)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15조, 제31조

「도로법」 제15조, 제31조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교차로 개선사업(1,800,000천원) ○ 지방도629호 용경도로 교차로 개선공사(공주지소) : 340,000천원 ○ 국지도96호 용천도로 교차로 개선공사(공주지소) : 350,000천원 ○ 지방도606호 남양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주지소) : 360,000천원 ○ 지방도611호 서천(군사)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공주지소) : 400,000천원 ○ 지방도691호 중장삼거리 개선(공주지소) : 50,000천원 ○ 지방도799호 십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공주지소) : 300,000천원	
총사업비	1,800,000천원(부 1,8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800,000		1,800,000	1,800,000	0		
국 비							
도 비	0		1,800,000	0	△1,800,000		
시군비							
부담금등	1,800,000		0	1,800,000	1,80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0,000	180,000		10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 원 (행) 4683

위험도로 개량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국지도 및 지방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609,000천원**(부 9,609,000) [기정 9,409,000천원 → 경정 9,609,000천원]
-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현지어건을 반영한 설계변경 등 사업량 증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기 확보 예산재원대체(도비→기금)
- 사 업 량 : 위험도로 개량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위험도로 개량사업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15조, 제31조

「도로법」 제15조, 제31조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위험도로개량(9,609,000천원) <추경 1회> 200,000천원 (공주지소) 1건, 200,000천원 증액 ○ 지방도629호 광덕도로 선형개량공사(L=0.73km, B=10.0m) : 1,009,000천원 [기정 809,000천원 → 경정 1,009,000천원, 증 200,000천원] ※ 2021년 12월 준공 예정 <본예산> 9,409,000천원 (종건소 도로건설과) 3건, 1,500,000천원 (공주지소) 14건, 6,209,000천원 (홍성지소) 4건, 1,70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9,609,000천원(부 9,609,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9,609,000		9,409,000	9,609,000	200,000		
국 비							
도 비	0		9,409,000	0	△9,409,000		
시군비							
부담금등	9,609,000		0	9,609,000	9,609,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 원 (행) 4683

위험교량 개량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위험교량개량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상 교량에 대하여 내구성·안전성 저하로 인한 중대결함 예방으로 안전사고 방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국지도 및 지방도 교량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7,250,000천원**(도 7,250,000천원) [기정 4,500,000천원 → 경정 7,25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7,250,000천원
 - ※ 증감사유: 교량 재가설 4개소('21년 하반기 준공예정)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도내 지방도상 교량 보수·보강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재가설 및 보수·보강, 내진성능보강 등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15조, 제31조

「도로법」 제15조, 제31조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단위 : 천원)
		비 고		
산출 기초	■ 위험교량개량(7,250,000천원) <1회 추경>: 2,750,000천원 증액 ◦ 교량 재가설공사(2,750,000천원) - 지방도635호 곡남교 재가설공사(L=30m, B=10.0m): 1,012,000천원 - 지방도637호 웅천교 재가설공사(L=30m, B=11.0m): 788,000천원 - 지방도647호 신창교 재가설공사(L=20m, B=10.5m): 450,000천원 - 지방도647호 용현교 재가설공사(L=33m, B=10.5m): 500,000천원			
	<본예산> 4,500,000천원 - 지방도624호 서원교 재가설공사(L=30m, B=10.5m): 770,000천원 - 지방도635호 곡남교 재가설공사(L=30m, B=10.0m): 500,000천원 - 지방도 교량 유지보수(26개소) = 3,230,000천원 · 공주지소 : 1,833,000천원 · 홍성지소 : 1,397,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7,250,000천원(도 7,2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7,250,000		4,500,000	7,250,000	2,750,000		
국 비							
도 비	7,250,000		4,500,000	7,250,000	2,750,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132,359	6,016,265	1,116,094	84.4%	1,116,09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김정흠 (행) 4681	하병열 (행) 2833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분담액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철도·항공 및 물류지원
	세부사업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통 계 목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403-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기존선(경부선, 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경부선 증설)을 활용하여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구축, 충청권 주요도시(대전, 계룡)의 활성화, 충청권 주요경제 인프라 통합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
- 사업 위치 : 충남도 계룡 ~ 대전시 신탄진
- 사업 기간 : 2016. ~ 2023.(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85,000천원**(도 142,500, 부 142,500) [기정 142,500천원 → 경정 285,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285,000천원
 -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계룡시 부담금 142,500천원 추가 계상
- 사 업 량 : L=35.4km(충남도 구간 2.7km)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
- 사업시행주체 : 국가철도공단
- 사업 내용 : 호남선활용(25.38km), 조차장~회덕2복선화(4.15km), 회덕~신탄진 단선 추가(5.82km)
정거장 12개소 : 신설역 6개소, 기존역 개량 6개소 계룡역 개량(고상홈 설치, 반복·대
기선로 설치, 전기·신호·통신 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 지원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부담)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분담액(4,679,000천원) ○ 공사비 1식 : 3,000,000천원 ○ 보상비 1식 : 1,500,000천원 ○ 기타 부대비 등 : 179,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4,679,000천원(국 1,000,000천원, 지방비 3,679,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92,327,000	22,614,000	4,536,500	4,679,000	142,500	165,034,000	계속
국 비(62.3%)	119,841,000	16,000,000	1,000,000	1,000,000	-	102,841,000	
지방비(37.7%)	72,486,000	6,614,000	3,536,500	3,679,000	142,500	62,193,000	
대전시(35.9%)	68,975,000	6,400,000	3,394,000	3,394,000	-	59,181,000	
충남도(1.8%)	3,511,000	214,000	142,500	285,000	142,500	3,012,000	
도 비(0.9%)	1,755,500	107,000	142,500	142,500	-	1,506,000	
부담금등(0.9%)	1,755,500	107,000	-	142,500	142,500	1,506,000	

* 부담비율 : 국비 62.3 %, 지방비 37.7% (대전35.9%, 충남 1.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철도항공물류팀	안병수 (행) 2830	강민수 (행) 4691	고동환 (행) 2835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철도 및 물류지원
	세부사업	지방이양사무 지원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통 계 목	국내여비(2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직접 수행 사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소요 재정 병행 이전(100만제곱미터 이상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6. 1. ~ 2021. 12. 31. (신규사업)
- 예 산 액 : 4,600천원(균 4,600천원)
- 사 업 량 : 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 지원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물류단지 지정 관련 업무 담당 출장여비 지급 및 물류단지 조성 관련 타 시·도 벤치마킹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지방이양사무 지원(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 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 관련 업무 담당자 등 출장여비 지급 · 150천원 x 4인 x 6개월 = 3,600천원 ○ 물류단지 조성 관련 타 시·도 벤치마킹 · 125천원 x 4인 x 2회(상·하반기) = 1,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4,600천원(국 4,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4,600		0	4,600	4,600		신규
국 비	4,600		0	4,600	4,600		균특
도 비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철도항공물류팀	안병수 (행) 2830	강민수 (행) 4691	엄우식 (행) 4693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지원(재무활동)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통 계 목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705-04)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기존 재원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한 사업의 예수금 이자상환
- 상환 기간 : 2022. 1. 1. ~ 2036. 12. 31.(5년 거치, 10년 상환)
- 예 산 액 : 0천원[기정 306,250천원 → 경정 0천원]
※ 증감사유: 예산담당관실의 융자계획(당초 '20년 12월 융자 → '21년 1월 융자) 변경에 따른 상환기간 변경
- 사 업 량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기간 변경('21년 → '22년)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6459(2021. 4. 28.)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융자조건)

-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지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0천원 [본예산 306,250천원 → 경정 0천원] (참고) 융자원금(17,500,000천원) * 이율(1.75%) = 306,250천원	
2021년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20,715,625		306,250	0	△306,250	20,715,625	신규
국 비							
도 비	20,715,625		306,250	0	△306,250	20,715,625	
시군비							
기 타							

*향후투자: 원금 17,500,000천원, 이자 3,215,625천원(5년 거치, 10년 상환)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안병수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이효승 (행) 4675

위험교량 개량(재무활동)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통 계 목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705-04)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기존 재원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한 사업의 예수금 이자상환
- 상환 기간 : 2022. 1. 1. ~ 2036. 12. 31.(5년 거치, 10년 상환)
- 예 산 액 : 0천원 [기정 8,750천원 → 경정 0천원]
※ 증감사유: 예산담당관실의 융자계획(당초 '20년 12월 융자 → '21년 1월 융자) 변경에 따른 상환기간 변경
- 사 업 량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기간 변경('21년 → '22년)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6459(2021. 4. 28.)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융자조건)

-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위험교량개량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0천원 [본예산 8,750천원 → 경정 0천원] (참고) 융자원금(500,000천원) * 이율(1.75%) = 8,750천원	
2021년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591,875		8,750	0	△8,750	591,875	
국 비							
도 비	591,875		8,750	0	△8,750	591,875	
시군비							
기 타							

*향후투자: 원금 500,000천원, 이자 91,875천원(5년 거치, 10년 상환)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안병수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이효승 (행) 4675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168
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 170
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성립전) 17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정책사업	토지행정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디지털지적구축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국 10,000)
 - ※ 증감사유: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추가 확보
- 사 업 량 : '21년 지적재조사사업(48개 사업지구 / 31,718필지 / 29,667천m²)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100년전 종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이용현황대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임.
- 지원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적재조사사업 : 10,000천원 ○ 지적재조사사업(10,000천원) - 일반운영비 : 지적재조사 관련 회의 6회, 사무용품구입 등 - 기타 사무관리(복합기 임차, 용지, 인쇄비, 토너, 봉투, 급량비 등)	
2021년 총사업비	10,000천원(국 1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0,000		0	10,000	10,000		신규
국 비	10,000		0	10,000	10,000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이성찬 (행) 2860	이학주 (행) 4785	박용신 (행) 480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	정책사업	토지행정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디지털지적구축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208,902천원**(국 6,208,902) [기정 6,706,111천원 → 경정 6,208,902천원]
- ※ 증감사유: 측량비 동결로 인한 사업비 감소
- 사 업 량 : 48개 사업지구 / 31,718필지 / 29,667천㎡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수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100년전 종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이용현황대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임.
- 지원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적재조사사업 : 6,208,902천원 ○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당초 예산 배정액과 확정 교부액 차액분 반영 · 당초 예산배정액 6,706,111천원 - 확정 교부액 6,208,902천원 = 감497,209천원 - (15개 시·군 / 48개 지구 / 31,718필지 / 29,667천㎡)	
2021년 총사업비	6,208,902천원(국 6,208,90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6,208,902		6,706,111	6,208,902	△497,209		
국 비	6,208,902		6,706,111	6,208,902	△497,209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669,970	4,669,970	0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이성찬 (행) 2860	이학주 (행) 4785	박용신 (행) 480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성립전)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드론산업 기반 구축
	세부사업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통 계 목	인건비(101-04) 일반운영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허위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의 체계적 관리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4. ~ 2021.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6,300천원**(국 36,300)
 - ※ 증감사유: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3항에 따른 균특보조금 교부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채용 1명, 홍보용 물품 제작 및 기타 사무관리 비용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변경, 현지 조사, 행정처분 등의 등록업체 관리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 지원 근거 :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동산개발업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관리 : 36,300(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7,374(천원) · 2,482(천원) x 기간제근로자 1(인) x 7(개월) = 17,374(천원) ○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 18,926(천원) · 업무 안내 책자 등 제작 : 5(천원) x 300(부) = 1,500(천원) · 리플릿, 홍보용품 등 제작 : 5(천원) x 300(개) = 1,500(천원)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제작 : 3(천원) x 500(개) = 1,500(천원) · 등기 등 우편요금 : 3(천원) x 1,000(개) = 3,000(천원) · 복합기 임차비용 8개월, 토너구매 10회 등 기타 사무용품 구입 = 11,426(천원)	
2021년 총사업비	36,300천원(국 36,3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6,300		0	36,300	36,300		신규
국 비	36,300		0	36,300	36,300		균특
도 비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무인항측팀	이성찬 (행) 2860	박삼해 (행) 4786	이건영 (행) 4797



종합건설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

1. 기간제근로자보수(구내식당)인건비	178
2. 설계 및 시공관련 자문수당(건축)	180
3. 설계 및 시공관련 자문수당(하천)	182
4.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184
5. 감정평가수수료 변상금 원금의 이자반납	186
6. 청사 노후물품 교체	188

기간제근로자보수(구내식당) 인건비	정책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단위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세부사업	건설공사 수행지원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내식당 운영으로 직원 편의 증진 및 청렴문화 제고
- 사업 위치 : 충남종합건설사업소(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32,830천원** [기정 16,220천원 → 경정 32,830천원]
※ 증감 사유 : 미책정된 구내식당 하반기 임금 6개월 증액분 반영
- 사 업 량 : 1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 사업 내용 :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8조

충청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8조(결원시 채용)

- ① 공무원 등의 채용권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② 사용부서의 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기간제근로자 보수(구내식당 운영) : 32,830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구내식당 운영)(증액분) : 16,610천원 ○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 32,830천원 · 기본급 : 1,822,480원×1명×12개월=21,869,760원 · 급량, 교통비 : 190,000원×1명×12개월=2,280,000원 · 상여수당 : 70,000원×1명×12회=840,000원 · 명절휴가비 : 200,000원×1명×2회=400,000원 · 연차 유급휴가 : 8,720원×1명×8시간×12일=837,12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250,000원×1명×12개월=3,000,000원 · 생활보전임금수당 100,000원×1명×12개월=1,200,000원 · 퇴직금 : 2,400,000원×1명=2,400,000원 (12개월)	
총사업비	32,830천원(도비 32,83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2,830		16,220	32,830	16,610		
국 비							
도 비	32,830		16,220	32,830	16,61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본예산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행정관리과	서무팀	최평근 (행) 7510	이미자 (행) 7511	조혜영 (행) 7512

설계 및 시공 관련 자문수당(건축)	정책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단위사업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
	세부사업	건설공사 수행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설계 및 시공 관련 자문수당 지급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4,800천원**(도 4,800천원)
- 사 업 량 : 자문수당(사업건당 3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 사업 내용 : 내실있는 공공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 설계 및 시공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의 자문 수당 지급
- 지원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설계 및 시공 관련 자문수당 ○ 4,800천원 ※ 산출기초 : 의뢰사업 10건 x 3명 x 160,000원 = 4,800,000원 ※ 2021년 예상 사업(2개소) - 안면도지방정원 가든센터 건립공사,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공사	
2021년 총사업비	4,800천원(도 4,8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4,800		0	4,800	4,800		신규
국 비							
도 비	4,800		0	4,800	4,8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공공건축과	대형건축팀	김재균 (행) 7550	여승기 (행) 7551	박성훈 (행) 7558

설계 및 시공 관련 자문수당(하천)	정책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단위사업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
	세부사업	건설공사 수행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설계 및 시공 관련 자문수당 지급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5,500천원**(도 5,500천원)
 - ※ 증감사유: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및 시공평가 위원회 자문수당
- 사 업 량 : 금곡천 및 오봉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및 시공평가(2회) 위원회 자문수당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내실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시공평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자문회(위원회)를 실시하고 자문수당 지급
- 지원 근거 :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건설기술영역 및 시공평가지침 제4조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기술영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영역사업[「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영역 및 시공평가지침 제4조(평가위원회)

⑨ 발주청은 용역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설계 및 시공 관련 자문수당(5,500천원) ○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자문수당(4,200천원) (금곡천, 오봉천) - 전문가그룹 100,000원 x 5명 x 3회 x 2개사업 = 3,000,000원 - 비전문가그룹 100,000원 x 3명 x 2회 x 2개사업 = 1,200,000원 ○ 시공평가 위원회 자문수당(1,300천원) (설계 : 금곡천, 온양천, 약봉천, 판교천, 청지천, 왕암천, 간지천) - 위원회 참석비 150,000원 x 3명 x 2회 = 900,000원 - 교통비 등 200,000원 x 2회 = 400,000원	
2021년 총사업비	5,500천원(도 5,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5,500		0	5,500	5,500		
국 비							
도 비	5,500		0	5,500	5,500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하천개발과	지역개발팀	이재원 (행) 7570	맹주원 (행) 7571	이현주 (행) 7573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정책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단위사업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
	세부사업	건설공사 수행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201-03,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예산 집행률 제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률 제고 등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를 통한 건설업 상생발전·건설경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행사운영비) [기정 9,000천원 → 경정 0천원]
(행사실비지원금) [기정 2,250천원 → 경정 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워크숍 추진 지남
- 사 업 량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1식(연 2회) 및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민간인) 1식(연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 0천원 ○ 워크숍 추진(제비용) : 0천원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민간인) : 0천원 ○ 워크숍 추진(민간인 참가자 식비) : 0천원	
2021년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0		11,250	0	△11,250		
국 비							
도 비	0		11,250	0	△11,2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0년 3회추경 전액 삭감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도로건설과	도로2팀	이창로 (행) 7530	조건희 (행) 7538	김예린 (행) 7539

감정평가 수수료 변상금 원금의 이자 반납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기타 반환금
	통 계 목	기타 반환금 등(802-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광업권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변상명령 무책판정에 의한 변상금 원금의 이자 반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아산시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공사)
- 사업 기간 : 2018. 4. ~ 2020. 12.
- 예 산 액 : **644천원**(도 644)
 - ※ 증감 사유 : 감정평가 수수료 변상금 원금의 이자발생분 반환
- 사 업 량 : 감정평가 수수료 변상금 납부자 3인에 대한 변상금 원금의 3개년분 이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변상금 납부에 따른 종건소 통장에서 예치 보관되어 발생된 원금의 이자 반납 추진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5조 제1항 및 「별표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기준)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3

구분	예탁기간	대상종류	이자율	비고
정기예금 예탁	만6개월 이상	○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비 고
산출 기초	■ 감정평가수수료 무책판정에 의한 변상금 원금 이자금 : 644천원(643,670원) ○ 변상금 원금(37,815천원)의 약 3년치 이자발생(연평균 금리 약0.6% 적용) : 643,670원 · 발생이자 : 643,670원 (변상자 3인) - 한국보증보험 216,630원 외 2인 427,040원 (각 213,520원)	
2021년 총사업비	644천원(도 64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644		0	644	644		신규
국 비							
도 비	644		0	644	644		
시군비							
기 타							

* 부담비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도로건설과	도로보상팀	이창로 (행) 7530	최훈규 (행) 7524	엄정식 (행) 7521

청사 노후물품 교체	정책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단위사업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
	세부사업	청사유지관리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 가구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000천원**(도 6,000)
 - ※ 증감사유 : '21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현원 증가(5명)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 사 업 량 : 사무용 책상 등 4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 사업 내용 : 사업소 내 물품(사무용 책상 등) 구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사 사무용 가구 구입 : 6,000천원 ○ 현원 증가(5명)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 6,000천원 - 사무용 책상 400,000원×5개 = 2,000,000원 - 사무용 의자 250,000원×5개 = 1,250,000원 - 사무용 서랍 250,000원×5개 = 1,250,000원 - 사무용 캐비닛 300,000원×5개 = 1,500,000원	
2021년 총사업비	6,000천원(도 6,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6,000		0	6,000	6,000		신규
국 비							
도 비	6,000		0	6,000	6,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행정관리과	서무팀	최평근 (행) 7510	이미자 (행) 7511	이재용 (행) 7518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공주지소

- | | |
|-----------------------|-----|
| 1. 지방도 유지보수 등 | 194 |
| 2. 논산지구 안전시설 정비 | 198 |
| 3. 금산지구 안전시설 정비 | 200 |
| 4. 청양지구 안전시설 정비 | 202 |

지방도 유지보수 등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 및 지방도 상 도로시설물의 적절한 유지보수공사 시행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6,030,000천원(부 6,030,000천원) [기정 6,000,000천원 → 경정 6,030,000천원]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 폐기물 처리비 반영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기 확보 예산재원대체
- 사 업 량 : 국지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L=916.5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시소
- 사업 내용 : 파손된 도로시설물(포장도, 배수시설 등) 유지보수공사 등의 수행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 6,030,000천원 ○ 도로시설물(포장도, 배수시설, 안전시설, 보행로 등) 정비 : 6,030,000천원 01) 천안서북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400,000천원 - 국지도70호 성월도로 배수로정비 : $L=250m \times 1m \times 200,000\text{원}/m^2 = 50,000,000\text{원}$ - 국지도23호 성거도로 배수로정비 : $L=250m \times 1m \times 200,000\text{원}/m^2 = 50,000,000\text{원}$ - 국지도70호 울금도로 배수로정비 : $L=100m \times 1m \times 200,000\text{원}/m^2 = 20,000,000\text{원}$ - 지방도624호 양당도로 차 선 도 색 : $L=150m \times 1m \times 200,000\text{원}/m^2 = 30,000,000\text{원}$ - 국지도23호 효계도로 포장도보수 : $L=119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150,000,000\text{원}$ - 국지도23호 자리도로 포장도보수 : $L=794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100,000,000\text{원}$ 02) 천안동남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400,000 천원 - 지방도629호 매당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300m \times 200,000/m = 60,000,000\text{원}$ - 지방도693호 장산도로 차선도색공사 : $L=3,000m \times 10,000/km = 30,000,000\text{원}$ - 국지도691호 신계도로 차선도색공사 : $L=2,000m \times 10,000/km = 20,000,000\text{원}$ - 지방도691호 천정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100m \times 200,000/m = 20,000,000\text{원}$ - 지방도691호 대정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200m \times 200,000/m = 40,000,000\text{원}$ - 국지도57호 오곡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100m \times 200,000/m = 20,000,000\text{원}$ - 국지도57호 명덕도로 포장보수공사 : $L=3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30,000,000\text{원}$ - 지방도629호 지장도로 포장보수공사 : $L=8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100,000,000\text{원}$ - 지방도629호 보성도로 포장보수공사 : $L=25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50,000,000\text{원}$ - 지방도691 대정도로 재해복구정비공사 : $L=50m \times 3m \times 200,000\text{원}/m = 30,000,000\text{원}$ 03) 공주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천원 - 지방도691호 계룡도로 배수로정비 : 배수시설 200,000원 $\times 150m = 30,000,000\text{원}$ - 지방도697호 반송도로 배수로정비 : 배수시설 200,000원 $\times 300m = 60,000,000\text{원}$ - 지방도697호 경천도로 배수로정비 : 배수시설 200,000원 $\times 150m = 30,000,000\text{원}$ - 국지도96호 대학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L= 635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80,000,000\text{원}$ - 대산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L= 15,873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200,000,000\text{원}$ - 만수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L= 15,873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200,000,000\text{원}$ - 북룡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L= 15,873m \times 3.5m \times 18,000\text{원}/m^2 = 100,000,000\text{원}$ 04) 논산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천원 - 국지도68호 벌곡도로 배수로정비 : $300m \times 200,000\text{원}/m = 60,000,000\text{원}$ - 지방도697호 연산도로 배수로정비 : $500m \times 200,000\text{원}/m = 100,000,000\text{원}$ - 지방도691호 석종도로 배수로정비 : $150m \times 200,000\text{원}/m = 30,000,000\text{원}$ - 지방도643호 삼전도로 배수로정비 : $150m \times 200,000\text{원}/m = 30,000,000\text{원}$ - 국지도68호 벌곡도로 사면정비공사 : $L=100m \times 300,000\text{원}/m = 30,000,000\text{원}$ - 지방도643호 가야곡도로 옹벽설치공사 : $L=100m \times 300,000\text{원}/m = 30,000,000\text{원}$ - 국지도68호 야촌도로 배수로정비 : $L=100m \times 200,000\text{원}/m = 20,000,000\text{원}$ - 국지도68호 동산도로 외 1개소 포장도보수 : $L=793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100,000,000\text{원}$ - 지방도697호 양촌도로 포장도보수 : $L=2,38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300,000,000\text{원}$ 05) 금산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천원 - 지방도601호 서대도로 외 1개소 배수로정비공사 : $L=200m \times 200,000\text{원}/m = 40,000,000\text{원}$ - 지방도601호 예미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100m \times 200,000\text{원}/m = 20,000,000\text{원}$	

	· 지방도635호 역평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400m \times 200,000\text{원}/m = 80,000,000\text{원}$ · 지방도635호 삼가도로 외1개소 배수로정비공사 : $L=200m \times 200,000\text{원}/m = 40,000,000\text{원}$ · 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외1개소 배수로정비공사 : $L=200m \times 200,000\text{원}/m = 40,000,000\text{원}$ · 지방도635호 건천도로 접속도로 개선공사 : $L=100m \times 200,000\text{원}/m = 20,000,000\text{원}$ · 지방도601호 군북로 포장보수공사 : $L=6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76,000,000\text{원}$ · 지방도635호 대둔산로 포장보수공사(상) : $L=1,0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126,000,000\text{원}$ · 지방도635호 대둔산로 포장보수공사(하) : $L=2,05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258,000,000\text{원}$ 06) 부여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천원 · 지방도606호 외산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300m \times 200,000\text{원}/m = 60,000,000\text{원}$ · 지방도625호 장암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125m \times 200,000\text{원}/m = 25,000,000\text{원}$ · 지방도723호 팔충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100m \times 200,000\text{원}/m = 20,000,000\text{원}$ · 지방도723호 내성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125m \times 200,000\text{원}/m = 25,000,000\text{원}$ · 지방도613호 금천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400m \times 200,000\text{원}/m = 80,000,000\text{원}$ · 지방도799호 석성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210m \times 200,000\text{원}/m = 42,000,000\text{원}$ · 지방도651호 정동도로 도로 포장보수공사 : $L=1,250m \times 8m \times 18,000\text{원}/m^2 = 180,000,000\text{원}$ · 지방도723호 수원도로 도로 포장보수공사 : $L=1,0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126,000,000\text{원}$ · 지방도799호 응평도로 도로 포장보수공사 : $L=300m \times 10m \times 18,000\text{원}/m^2 = 54,000,000\text{원}$ · 지방도613호 상천도로 도로 포장보수공사 : $L=7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88,000,000\text{원}$ 07) 서천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천원 · 지방도611호 은곡도로 배수시설정비 : $L=100m \times 200,000\text{원}/m = 20,000,000\text{원}$ · 지방도611호 화천도로 배수시설정비 : $L=450m \times 200,000\text{원}/m^2 = 90,000,000\text{원}$ · 지방도613호 연봉도로 배수시설정비 : $L=1,625m \times 200,000\text{원}/m^2 = 325,000,000\text{원}$ · 국지도68호 원수도로 배수시설정비 : $L=250m \times 200,000\text{원}/m^2 = 50,000,000\text{원}$ · 지방도611호 태월도로 길어깨 확장 : $L=50m \times 400,000\text{원}/m^2 = 20,000,000\text{원}$ · 지방도613호 동산도로 옹벽설치 : $L=50m \times 600,000\text{원}/m^2 = 30,000,000\text{원}$ · 지방도613호 동산도로 포장보수공사 : $L=4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50,000,000\text{원}$ · 지방도611호 지원도로 포장보수공사 : $L=2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25,000,000\text{원}$ · 지방도611호 화금도로 포장보수공사 : $L=715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90,000,000\text{원}$ 08) 청양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700,000천원 · 지방도645호 작천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400m \times 200,000\text{원} = 80,000,000\text{원}$ · 지방도606호 구룡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280m \times 200,000\text{원} = 56,000,000\text{원}$ · 지방도610호 화강도로 배수로정비공사 : $L=490m \times 200,000\text{원} = 98,000,000\text{원}$ · 지방도625호 왕진도로 정비공사 : $L=4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50,000,000\text{원}$ · 지방도604호 광암도로 정비공사 : $L=7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88,000,000\text{원}$ · 지방도723호 화산도로 포장보수공사 : $L=3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38,000,000\text{원}$ · 국지도96호 농소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L=7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88,000,000\text{원}$ · 지방도625호 인양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L=45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57,000,000\text{원}$ · 지방도645호 중산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L=50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63,000,000\text{원}$ · 지방도610호 산정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L=650m \times 7m \times 18,000\text{원}/m^2 = 82,000,000\text{원}$ 09) 국지도 및 지방도 제초작업 및 긴급보수공사 : 1,000,000천원 · 국지도 및 지방도 제초작업(풀깎기) : 7개시군 $\times 71,428,571\text{원} = 500,000,000\text{원}$ · 긴급보수공사 : 여름철·겨울철 긴급보수공사 1식 = 500,000,000원 10) 소내 폐기물처리용역 : 30,000천원 · 소내 폐기물처리용역 : $60\text{ton} \times 50,000\text{원}/m^2 = 30,000,000\text{원}$	
2021년 총사업비	6,030,000천원(부 6,0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6,030,000		6,000,000	6,030,000	30,000		신규
국 비							
도 비	0		6,000,000	0	△6,000,000		
부담금등	6,030,000		0	6,030,000	6,03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시군비							

* 부담비율 : 도비 100%(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052,525	7,575,055	477,470	94	477,47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보수1팀	전상근 (행) 7600	강현수 (행) 7613	김영걸 (행) 7622

논산지구 안전시설 정비공사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 및 지방도의 도로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도민의 인명피해 방지
- 사업 위치 : 논산시 일원 국지도 및 지방도
- 사업 기간 : 2021. 3. ~2021. 12.(신규지구)
- 예 산 액 : 75,000천원(소 75,000)
- 사 업 량 :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물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물 정비
- 지원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75,000천원 ○ 시설비 : 75,000천원 · 중앙분리대 정비 : 75,000천원 - 300,000원 × 250m = 75,000,000원	
총사업비	75,000천원(국비 7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75,000		0	75,000	75,000		신규
국 비	75,000		0	75,000	75,000		소방
도 비							
부담금등							
시군비							

* 부담비율 : 국비 100%(소방안전교부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보수1팀	전상근 (행) 7600	강현수 (행) 7613	김영걸 (행) 7622

금산지구 안전시설 정비사업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도로 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 확대 피해 방지와 실질적인 도민의 민원해결 및 도로이용자의 인명피해 방지
- 사업 위치 :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109-5번지 일원(지방도 635호선)
- 사업 기간 : 2021. 4.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소 150,000)
- 사 업 량 : 삼거리 안전시설 정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사업 내용 : 교량난간설치 L=100m, 차선도색 L=250m,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45EA 등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삼거리 안전시설 정비사업 ○ 시설비(150,000천원) · 교량난간설치 L=100m, 차선도색 L=2km,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25EA 등 - 교량난간설치 L=100m × 400천원 = 40,000천원 - 차선도색 L=2km × 5,000천원 = 10,000천원 -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체 및 설치 25EA × 4,000 = 100,000천원	
총사업비	150,000천원(국비 1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50,000		0	150,000	150,000		신규
국 비	150,000		0	150,000	150,000		소방
도 비							
부담금등							
시군비							

* 부담비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구조물관리팀	전상근 (행) 7600	이경원 (행) 7637	임하성 (행) 7617

청양지구 안전시설 정비공사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 및 지방도의 도로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도민의 인명피해 방지
- 사업 위치 : 청양군 일원 국지도 및 지방도
- 사업 기간 : 2021. 3. ~2021. 12.(신규지구)
- 예 산 액 : 75,000천원(소 75,000)
- 사 업 량 :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물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물 정비
- 지원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75,000천원 ○ 시설비 : 75,000천원 · 중앙분리대 정비 : 75,000천원 - 300,000원 × 250m = 75,000,000원	
총사업비	75,000천원(국비 7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75,000		0	75,000	75,000		신규
국 비	75,000		0	75,000	75,000		소방
도 비							
부담금등							
시군비							

* 부담비율 : 국비 100%(소방안전교부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구조물관리팀	전상근 (행) 7600	이경원 (행) 7637	박병현 (행) 7618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홍성지소

- | | |
|---------------------|-----|
| 1. 지방도 유지보수 등 | 208 |
| 2. 도로시설물 정비 | 212 |

지방도 유지보수 등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 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홍성지소 관할 지방도 765km에 대하여 도로배수시설, 안전시설, 시설물(교량)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하여 사고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200,000천원(부 6,200,000) [기정 5,900,000천원 → 경정 6,200,000천원]
- ※ 증감사유(재원변경사유): 2020년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비 추가 반영,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기 확보 예산재원대체
- 사 업 량 : 국지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L=765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파손된 도로시설물(포장도, 배수시설 등) 유지보수공사 등의 수행
- 지원 근거 : 도로법 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유지보수 등 : 6,200,000천원 가. 시설비(401-01) : 6,200,000천원 ○ 도로시설물(포장도, 배수시설, 안전시설, 보행로 등) 정비 : 6,200,000천원 01) 보령지구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지방도617호 늑전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06호 개화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10호 황룡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10호 장현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02) 아산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지방도623호 신창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개소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국지도624호 염치교차로 개선공사 : 1개소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24호 금성교차로 개선공사 : 1개소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24호 강청도로외 2개소 배수로정비 : 3개소 × 54,200천원/개소 = 162,500천원 03) 당진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지방도615호 광천도로 배수시설 개선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19호 면천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47호 신시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15호 대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04) 서산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지방도609호 원평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34호 양길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47호 태봉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서산지역 배수시설 정비공사 : 3개소 × 54,200천원/개소 = 162,500천원 05) 홍성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지방도609호 화산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국지도96호 도산~소암리 포장도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16호 덕정~죽림리 포장도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국지도96호 성호도로 포장도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06) 예산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지방도616호 꺾곡~화산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19호 신가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광시면, 대술면, 봉산면 배수로정비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09호 사석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07) 태안지구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 650,000천원 · 국지도 96호 정죽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03호 마산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지방도634호 반계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1,625m × 100천원/m = 162,500천원 · 태안지역 배수시설 정비공사 : 3개소 × 54,200천원/개소 = 162,500천원 08) 지방도 교량 유지보수사업 : 700,000천원 · 지방도 교량 보수보강공사 : 10개소 × 70,000천원 = 700,000천원 09) 지방도 유지보수 예비비 : 150,000천원 · 도로 긴급복구 : 1식 × 150,000천원 = 150,000천원 10) 지방도 풀깎기 : 500,000천원 · 도로 풀깎기 : 1,000km × 500천원/km = 500,000천원 11) 지방도602호 계정리 재해복구(사면보강)사업 : 50,000천원 · 영구앵커 및 계단식옹벽 설치 1식 = 50,000천원 12) 국지도70호 선장~염치 사면보강사업 : 250,000천원 · 사면 안정공 1식 = 250,000천원	
총사업비	6,200,000천원(부 6,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6,200,000		5,900,000	6,200,000	300,000		
국 비							
도 비	0		5,900,000	0	△5,900,000		
부담금등	6,200,000		0	6,200,000	6,20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시군비							

* 부담비율 : 도비 100%(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475,612	8,693,610	782,002	91.7	781,82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보수1팀	원종성 (행) 7650	양길태 (행) 7661	문진호 (행) 7662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 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홍성지소 관할 지방도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50,000천원(소 850,000)** [기정 700,000천원 → 경정 850,000천원]
- ※ 증감사유: 지방도 도로시설물 정비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지방도 및 국지도 안전시설물 정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지방도 및 국지도 안전시설물 정비
- 지원근거 : 도로법 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설비 : 850,000천원 ◦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 300,000천원 - 75,000원/m × 4,000m = 300,000천원 ※ 홍성지소 관할 국지도 및 지방도 등 위험구간 교체 및 설치 ◦ 차선도색 정비 : 400,000천원 ※ 홍성지소 관할 국지도 및 지방도(99,700m×0.15m) - 27,000원/㎡ × 15,000㎡ ≒ 400,000천원 ◦ 교통안전표지 설치 : 150,000천원 - 5,000,000원/ea × 30ea=150,000천원	
총사업비	850,000천원(소 8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850,000		700,000	850,000	150,000		
국 비	850,000		700,000	850,000	150,000		소방
도 비							
부담금등							
시군비							

* 부담비율 : 국비 100%(소방교부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83,000	483,000	-	10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보수1팀	원종성 (행) 7650	양길태 (행) 7661	문진호 (행) 766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철도항공과

1.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 218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세부사업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수요의 원활한 흐름확보 및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 일원
- 사업 기간 : 2017. ~ 202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18,300천원**(국 212,000 도 106,300) [기정 892,800천원 → 경정 318,3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424,300천원
- ※ 증감사유: '21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21.1.27.)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4차로 시설 L=1.24km, B=20.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
- 사업 내용 : 광역도로 4차로 건설 [연장 1.24km, 폭 4차로(20.0m)]
- 지원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12~'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공사비·보상비 (국비 50%, 지방비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424,300천원) ○ 시설비 : 424,300천원(국 212,000천원, 도 106,300천원, 시군 106,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424,300천원(국 212,000천원, 도 106,300천원, 시군 10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4,154,300	13,730,000	1,190,300	424,300	△766,000		
국 비	7,077,000	6,865,000	595,000	212,000	△383,000		
도 비	3,538,800	3,432,500	297,800	106,300	△191,500		
시군비	3,538,500	3,432,500	297,500	106,000	△191,500		
기 타							

* 부담비율 : 공사비(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 부담비율 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37,500	2,737,5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17년 3월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안병수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정책과

1.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224
2. 혁신도시 지정 기념 내포주민 화합한마당 226
3. 내포신도시 자미원 호수 수질개선 사업 228
4.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 230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정책사업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 추진
	단위사업	도청소재 도시건설
	세부사업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 지원 및 홍보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워크숍 및 홍보 행사 운영 및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팸투어·토론회개최 등 홍보활동 운영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9,500천원(사무관리비 42,500천원, 행사운영비 27,000천원)
※ 증감사유: 업무 이관(건설정책과 → 혁신도시정책과)에 따른 신규 편성
- 사 업 량 :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관련 홍보활동 운영 및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홍보행사 운영
- 지원 근거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5-3-1)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무관리비: 42,500천원 ○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관련 홍보 : 42,500천원 - 지상파 방송 및 언론매체 홍보, 중앙정부 및 언론 관계자 팸투어 실시, 광고전단 및 리플릿 제작 배포,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 ■ 행사운영비: 27,000천원 ○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관련 행사 운영 -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행사시설비, 행사지원 강사료 등	
2021년 총사업비	69,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69,500		0	69,500	69,500		
국 비							
도 비	69,500		0	69,500	69,5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2021. 5월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정책과	공공기관투자자유치팀	육안수 (행) 2850	조덕래 (행) 4582	하동균 (행) 4594

혁신도시 지정 기념 내포주민 화합한마당	정책사업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 추진
	단위사업	도청소재 도시건설
	세부사업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 지원 및 홍보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기념하여 내포지역 주민들과 화합과 축하의 장을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30,000천원**(도 30,000)
- ※ 증감사유: 업무 이관(건설정책과 → 혁신도시정책과)에 따른 신규 편성
- 사 업 량 : 주민 화합한마당 1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내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혁신도시 지정 기념 화합한마당 개최
- 지원 근거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5-3-1)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혁신도시 지정 기념 내포주민 화합한마당 화합한마당 행사 1회 개최 - 3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30,000천원(도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0,000		0	30,000	30,000		
국 비							
도 비	30,000		0	30,000	30,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추경1회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비대상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정책과	공공기관투자자유치팀	육안수 (행) 2850	조덕래 (행) 4582	하동균 (행) 4594

내포신도시 자미원 호수 수질개선 사업	정책사업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 추진
	단위사업	도청소재 도시건설
	세부사업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 지원 및 홍보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호수의 수질개선사업을 통하여 오염물질 저감 및 녹조 발생 예방 등
- 사업 위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홍예공원 내 자미원 호수)
- 사업 기간 : 2021. 7. ~ 2021. 11.(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도 15,000)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30,000천원
- 사 업 량 : 홍예공원 호수 수질개선(호수면적-35,579㎡, 담수량-42,695㎥)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홍예공원 자미원 호수 수질개선 ※ 여과방식 등 친환경 방법 적용
- 지원 근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9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홍예공원 호수 수질개선 사업 ○ 수질오염물질 제거 : 3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15,000)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30,000		0	30,000	30,000		
국 비							
도 비	15,000		0	15,000	15,000		
시군비	15,000		0	15,000	1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1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완료
2021년 (2021~2025)	-	-	-	-	-	-	2021. 5월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정책과	혁신도시정주기반팀	육안수 (행) 2850	이중의 (행) 4854	박대선 (행) 4598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2013~2019)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13. ~ 2019.(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84,084천원** [기정 1,565,783천원 → 경정 1,584,084천원]
 ※ 증감사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20. 8. 19.)이후 발생한 이자반환금 증가액 편성
- 사 업 량
 -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신도청~예산수덕사(사업비 1,405억원), 신도청~국도45호선(사업비 425억원)]
 개설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20. 8. 19.) 이후 발생한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 편성 근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국고보조금 관리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 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액: 18,301천원 ○ 본예산 편성 당시 추정 이자 반환금 × 1일 이자(금리 1.35% ÷ 365) × 경과일수 : 1,565,782,990원 × (0.0135 ÷ 365) × 316 = 18,300,357원 - 경과일수 : 316일('20. 8. 19. ~ '21. 6. 30.)	
2021년 총사업비	1,584,084천원(도 1,584,08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1,584,084		1,565,783	1,584,084	18,301		
국 비							
도 비	1,584,084		1,565,783	1,584,084	18,301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본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정책과	혁신도시정주기반팀	육안수 (행) 2850	이중의 (행) 4584	유준모 (행) 285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건축도시과

1. 학교용지부담금(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36
-------------------------------	-----

학교용지부담금(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정책사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부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교부금
	통 계 목	법정전출금(7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051,088천원(도 9,051,088천원) [기정 7,585,000천원 → 경정 1,466,088천원]
- ※ 증감 사유 :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1,466,088천원)만큼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교부금을 증액편성하여 학교신설 추가수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른 세입세출 일치
- 사 업 량 : 학교신설 추가수요 대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사업 내용 : 도내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등으로 교육청에 교부
- 지원 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 제5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학교용지부담금 법정 전출금(교육청 교부금) ○ 결산 결과 확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금번 추경 시 반영하여,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711-01)목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법정 전출금(교육청 교부금)목도 순세계잉여금 증액분(1,466,088천원)만큼 증액 편성하여 학교신설 추가수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른 세입세출 일치 위함	
2021년 총사업비	9,051,088천원(도9,051,08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가+나+다)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본예산(A)	추경 1회(B)	증감(B-A)		
계	9,051,088		7,585,000	9,051,088	1,466,088		
국 비							
도 비	9,051,088		7,585,000	9,051,088	1,466,088		
부담금등							
시군비							

* 부담비율 : 도비 100%

** 부담비율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0,840,000	0	10,840,0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 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윤영산 (행)2820	노윤철 (행)4641	이정아 (행)4652

